

월간

상장

2015
Vol. 489

9



상장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의 기업이며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시사칼럼 / 중국 경제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논단 /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회원사 탐방 / 대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ontents

KLCA Monthly Journal

2015. 09

04 시사칼럼

중국 경제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08 회원사 탐방

대교

12 논단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 신규회원사 소개

AJ네트웍스

20 회원사 NEWS

24 상장협 NEWS

상장협소식 / 연수행사 / 이달의 신간



소식

발행일 2015. 9. 9

발행인 정구용

편집인 김진규

발행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2087-7000

Fax. 02-6919-2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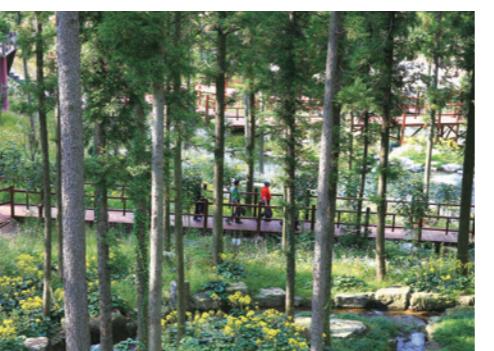
등록 2014년 08월 14일(정기간행물)

영등포, 라00410

편집디자인 경성문화사 02-786-2999

인쇄 (주)동화인쇄공사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호 (○년 ○월)"에서 전재 또는 역재했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의 내용은 본회 웹사이트(www.klca.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7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 해설 ⑧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 해설 ③
기업공시 유의사항 ④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 실적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53 Q상담실

연결납세방식에서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임원개별보수공개
IFRS 15 수익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58 최신법령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 / 국세청 예규

64 자본시장 NEWS

증시동향 / 주요정책동향

67 경제기자석

'복리의 마법' 통하지 않는 시대, 투자 관심 가져야
김성은 머니투데이 기자

68 고전 속의 경영

초(楚) 장왕(莊王)의 유머 감각과 리더십
김영수 고전연구가

70 그 곳에 가고싶다

탐진강과 억불산을 아름답게 즐기다. 장흥여행
문일식 여행전문칼럼니스트

74 직장in Life

슈퍼맨을 위한 변명
조정화 라이프코치

중국 경제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최근 중국의 경기 리스크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네 차례의 금리 인하와 두 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둔화에 이어 수출마저 부진하여 올해 7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비 0.6% 감소하였다. 7월달 산업생산증가율도 GDP성장률보다 낮은 6%대를 보이고 있고, 7월 제조업 PMI지수도 전월비 0.2pt 하락한 50을 보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리커ಚ 총리가 언급한 신창타이(新常態 : New normal) 7%보다 낮은 6%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공장이자 시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국(총수출의 25%차지)이고 GDP에서 10%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이다. 필자는 이러한 중국이 왜 이렇게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위안화 및 금리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을 이 바오바(保八: 8%를 유지)를 하지 못해 올 상반기에 7%를 보이고 향후에도 5~6%대로 낮은 성장률로 전망된다. 기존 전통 제조업의 공급과잉 구조,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소득의 양극화, 신성장 동력 산업의 부재 등 때문이다. 이 같은 저성장 국면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변화인데, 이외에 다음 세 가지를 그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축이 투자에서 소비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GDP대비 투자 비중은 2011년 47%에서 46%로 낮아진 반면 소비 비중은 50%에서 51%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도 한국과 일본처럼 경제 성장기에서 둔화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중국의 경제는 공급과잉에 처해 있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그리고 인프라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의 조기 실행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7월 -7.1%로 4개월 연속 감소세), 스마트폰 판매량도 2분기에 감소(-4%, yoy)로 전환되는 등 내수마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소비 위축세를 더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의 GDP를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2차산업의 GDP 대비 비중이 2008년 48%에서 44%로 낮아지는 반면, 3차산업은 43%에서 51%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산업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송, 유통, 금융,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3차산업은 선진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처럼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내에서의 전통 제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는 우리나라로 전이되고 있고, 조선, 철강, 화학업체에 이어 자동차, 휴대폰 업체로 확산되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된다.

셋째는 수출입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고(2006년 47%에서 올 상반기 31%), 기술경쟁력 향상에 따라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제조업의

공급우위로 인해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품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각종 부품 및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대중수출의 60~70%차지)도 점차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지난해(-0.4%)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감소세(-2.1%, yoy)를 보여 총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지난 8월 11일~13일에 세번의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전망이다. 위안화 절하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중국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체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엔화약세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월별 총수출액이 올 1월부터 7개월째 연속하여 전년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위안화 약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다면 좋겠지만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둔화와 중국의 GDP대비 낮은 수출기여도를 감안할 때 우리기업의 대중수출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같은 위안화 절하는 자원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생산량 확대 속에 중국의 원자재 수입을 둔화시켜 향후에도 국제 원자재가격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가치의 동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과 원자재가격 하락기에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기업환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중국의 다섯번째의 금리 인하와 세번째의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돈의 흐름이 실물경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는 공급과잉에 처해 있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그리고 인프라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의 조기 실행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제 구조변화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인하(또는 할인)정책을 펼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인도나 아세안 국가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급과잉 업종이라도 중국 경쟁사보다 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프리미엄화(자동차, 휴대폰, 가전의 고급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계속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중국시장을 우리 국내시장의 연장선으로 보고 소비자들이 원하고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어 무관세, 무역장벽이 해소되면 화장품, 생활가전, 패션, 고급식품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업종인 음식료, 유통업체들의 중국 진출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서비스산업에서도 대중 진출 및 수출확대 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된 전인교육기업

DAEKYO
대교



(주)대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눈높이에 맞춰 가르친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39년간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이다.

대교는 교육업계 최초로 '학습지'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며 개인별, 능력별 1:1 방문학습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는 교사 중심이었던 기존 교육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춰 가르치는 '눈높이교육' 철학으로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교육이 실현된 것이다.

이후 대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기주도학습관 '눈높이러닝센터'를 개설하고,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오고 있다.

대표 브랜드 '눈높이' 외에도 중국어 교육 브랜드 '차이홍', 독서논술학습 '솔루니', 전집 브랜드 '소빅스', 창의적 체험활동 서비스 '드림멘토', 유아동 도서브랜드 '꿈꾸는달팽이', 어린이 방송 전문채널 '대교어린이TV'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맞춤 학습으로 잠재력 이끌어내는 '눈높이'

대교의 교육철학인 '눈높이'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키를 낚춘 선생님'에서 유래됐다. 어린이의 눈에 보이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키를 낚줘 어린이와 같은 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본 선생님의 마음에서 '눈높이'가 탄생한 것이다.

'눈높이'는 학년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학력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이 정해지는 학습자 중심의 개인별, 능력별 맞춤 교육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며 국내 대표 교육서비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눈높이교육 프로그램은 세분화된 단위(Small Step)로 구성되어 학생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잠재 능력을 찾아 개발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눈높이러닝센터'를 오픈하며, 방문학습 위주에서 내방학습까지 가능하도록 고객의 학습 선택권을 넓혔다. 눈높이러닝센터는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문선생님의 일대일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기주도 학습관이다. 멀티미디어실, 온라인 학습 시스템 등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회원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형성해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돋는다.

2011년에는 업계 최초로 스마트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선생님이 방문 즉시 채점을 통해 올바른 학습 처방을 내려 결과를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누적 학습결과를 분석해 진도를 결정하며 과학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1:1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눈높이 APP과 눈높이 모바일 학습관을 출시하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원에게는 최상의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형 교육 과정 패러다임에 맞춘 콘텐츠로 승부

대교는 도서출판과 유통, 방송 미디어 사업을 통해 다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 통합형 교육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유아부터 초등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하며 교육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눈높이선생님과 학생의 학습 장면



재능 있는 다문화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는 눈높이드림프로젝트



박수완 대표이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는 눈높이사랑봉사단



2015년 4월, 중국 상해에 오픈한 아이레벨(Eye Level) 러닝센터

전집브랜드 ‘소빅스’는 주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폭넓은 사고를 통해 유아와 초등학생의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 시킨다. 독서논술학습 ‘솔루니’는 소수정예 토론 수업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논리력을 길러주며, 유아동 도서 브랜드 ‘꿈꾸는달팽이’는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성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방송채널 ‘대교어린이TV’는 어린이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우수한 방송 콘텐츠와 함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실시하며 국내 최고의 어린이 문화채널로 도약하고 있다.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눈높이’

대교는 눈높이교육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의 해외 직접 진출은 물론, 현지 유력 사업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및 프랜차이즈 확대 등을 통한 사업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교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을 필두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후, 눈높이의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미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세계 20개국에 현지 법인 및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올해 안에 인도와 영국에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2년에는 ‘눈높이’의 글로벌 브랜드 ‘아이레벨(Eye Level)’을 런칭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민 중심의 사업전개에서 벗어나 러닝 센터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현지인들에게 눈높이

교육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해에 아이레벨 러닝센터 1호점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중국 사업 확장을 알렸다. 이처럼 해외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레벨’은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기업’ 선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200(Franchise 200)’ 중 100위에 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경영 실천

대교는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통한 내실을 다져 왔다. 그동안 대교는 신뢰받는 교육기업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왔다.

이에 대교는 지난 7월, 모범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 받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제16회 감사대상’의 법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교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투명성이 높고 건전한 회계 관행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투명회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존경받는 기업

대교는 업의 특성을 살려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 하는 프로보노(Pro Bono)를 지향해왔다. 단순기부와 일회성 나눔을 지양하고, 배움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

며 함께 완성해나가는 나눔의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대교 임직원과 눈높이선생님들이 지난 2000년 자발적으로 구성한 ‘눈높이사랑봉사단’은 주변 이웃과 사회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능을 발굴해 지원하는 ‘눈높이드림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돋는 1사 1촌 자매결연,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교육재능나눔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여자축구팀을 운영하고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며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교문화재단에서는 눈높이교육상, 눈높이아동문학대전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눈높이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교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년 연속 1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7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고객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된 전인교육기업’을 향해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된 전인교육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평생교육기반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된 전인교육기업의 위대한 꿈을 펼치기 위해 늘 앞선 생각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영리법인으로서 세계최초로 유치한 차이홍 공자학당



교육서비스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 자기주도학습관, 눈높이러닝센터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통제기준



박세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 내부통제 법제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법령 준수, 건전한 자산 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가장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제화의 방법으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내부통제나 준법감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내부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얻을 수가 없었다. 그 후 2011년 상법개정으로 상장회사특례 규정인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이 입법됨으로써, 금융관계법상 준법감시제도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내부회계제도 · 상법상 준법지원제도 등이 각 법역에서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습이 되었다(필자는 이를 한국형 내부통제법제로 칭하고 싶다).^① 그런데 상법은 상사기본법으로써 우리나라 내부통제 법제의 기반을 닦고 향후 각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한 특칙을 원만하게 뒷받침하며 다양한 법령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상장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억제라는 소명제에 집착하여 내부통제의 부분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준법지원체제 만을 입법대상으로 삼고 말았다. 따라서 상법과 금융관계 특별법, 회계 및 감사관련 특별법 등 현행 법령 상호간의 적용상 갈등은 물론이고, 향후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에도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②

그렇지만 이미 상법과 상법시행령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학계나 기업 그리고 기업 유관 단체들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012년 4월 논란 끝에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



법상 준법통제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금융기관 제외)로 확정되었고 보완되어야 할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도 구체화되었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법무부와 보조를 맞춰 준법통제프로그램의 핵심사항인 준법통제기준의 표준 규정을 제정 · 발표하였다. 기업들이 아직은 준법통제기준과 관련하여 물려받은 유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도 충분하게 축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현재 유일한 공신력 있는 표준모델로서 개별 기업들의 준법통제기준 마련에 있어 시금석이 되고 있다. 다만 준법통제기준은 기업마다 자신들의 영업상 특성, 자산 및 종업원의 규모, 경영 조직의 특이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생태적 속성상 차이성이 강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표준준법통제기준 속에

담긴 하드웨어적 프레임을 적합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운영상 가능성을 타진해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에 통제수준별 · 영업부문별 표준준법통제기준을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에서는 현재의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최대한 현명하게 활용하는 자세를 생각해본다.

「표준준법통제기준」 구성 체계의 이해

준법통제기준은 그 기업의 준법통제체계의 조직체계는 물론이고 전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와 핵심적 행동기준을 담고 있는 기업들의 준법장전(遵法章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준법통제기준에는 상법이 요구하는 법정 사항은(상법시행령 제40조) 물

- 1) 상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13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적용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은 상법 제542조의13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2015년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독립적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법상 준법통제규정이나 제반 금융관계법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규정과의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실무상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론이고 해당 기업의 영업상 특성, 경영진이 파악하고 있는 취약부문에 관한 관리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기도 한다.³⁾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법상 준법통제체제의 운용이 강제되는 회사들이 그 규모나 영업 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규정화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을 적법하고 타당한 내부통제 원리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표준준법통제기준 초안을 디자인하면서 통제수준 선택의 고민이 적지 않았으나 가급적 낮은 수준의 필수적인 통제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표준준법통제기준의 구성요소 설정 및 전개는 미국의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발표한 1992년 내부통제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즉 규정들을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통제행위(control activities),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감독평가행위(monitoring activities) 등으로 나누고,⁴⁾ 이들이 PDCA(Plan-Do-Check-Action) 원칙에 따라 순환하는 체계를 염두에 두었다. 준법통제환경에 관한 규정들을 제1장 총칙 다음인 제2장에 배치하고(Plan에 해당), 이어지는 제3장에 준법통제활동에 관한 규정을(Do에 해당), 체제의 유효성 평가와 준법통제시스템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Check & Action에 해당) 위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부터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원리적 이해와 원활한 실무상 적용을 위하여 각 장마다 주요 규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원리에 부합하는 준법통제환경의 조성

적절하고 효율적인 준법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따

라서 준법통제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등의 통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이사회에 있다(상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표준준법통제기준 제4조, 제6조 제1항). 이사회는 준법통제체제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 그 정점(頂點)에 위치하며 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자이기도 하다.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 준법통제체제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집행임원이 행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상법이 이사회의 권한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4호), 상법 및 상법시행령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준법통제체제에 관한 주요사항의 의사결정권한(준법지원인의 선임이나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등)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⁵⁾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준법통제체제의 실무적 운용을 지휘하며 필요하면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준법지원부서의 조직형태나 지휘 체계는 다양한 모습일 수 있지만 준법지원인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휘와 감독 그리고 보고에 있어 조직계통상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준법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가 직접 통솔하거나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 산하에 준법지원인이 이끄는 독립된 준법지원부서나 (준법통제기능이 포함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형태를 전형적인 편제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준법지원조직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같은 회사의 감사(監査)기관과는 조직체계상으로나 운용상으로 지휘·통솔관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사가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준법지원인이 감사나 감사위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론 감사는 이사에 대한 업무감사의 차원에서 적정하고 유효한 준법통제체제



준법지원인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준법점검과 그 결과 보고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준법지원인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3) 법령이 준법통제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필수법정사항이 아니면, 준법통제기준의 하위규범인 '회사 내부 규칙'이나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준법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COSO는 1992년 내부통제를 통합프레임(Integrated Framework)으로 개념 정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후, 2004년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보고서에서는 회사전체의 위험관리시스템차원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제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1992년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2013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를 발표하였다(<http://www.coso.org/documents/COSO%20Framework%20Release%20PR%20May%202014%202013%20Final%20PDF.pdf>).

5)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4호 괄호의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상법 제408조의4 제2호에 따라 상법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정관규정으로 집행임원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집행임원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통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2호)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주식회사에서의 기관 간 업무분화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법에 의한 해결이 없는 한 넓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가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준법점검이 미흡하거나 보고가 차단되는 등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6조 [참고]내용 참조). 또한 비효율적인 준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상법 제412조의4)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준법통제기준에 정하면서 상법과 상법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8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회사 내 잠재 위험을 용이하게 탐지하고 준법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분배·정리할 수 있는 업무파악 및 조직 관리능력이나 기업의 윤리 및 가치를 제고하는 것과 관련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 등을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요건을 규정화할 수 있다. 준법통제환경 조성에 있어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법지원인의 직무수행상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준법점검과 그 결과 보고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준법지원인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관 및 준법통제기준에 준법지원인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보통 결의요건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고(예를 들어 "임기 중 준법지원인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표준준법통제기준 제7조 제1항 [참고]내용 참조), 준법지원인의 해임을 비롯한 각종 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법통제 행동강령이나 세부규칙에 정하여 다른 임직원의 징계와 다르게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임기 중 인사이동은 물론이고 임기가 종료된 경우나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직급을 낮추거나 보수나 기타 계약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의 인사상 부당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회사의 자치적 결정에 의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준법통제조직이 경영라인을 지원하는 조직이지만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경영진이나 기타 임원진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건전한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다. 준법지원인의 회사 내 직급을 경영진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러한 인사상 불

이의 차단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준법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회사 영업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타 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상법시행령 제42조, 표준준법통제기준 제11조). 다만 회사의 사정상 준법지원조직을 영업조직과 완전히 구분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위험에 충분히 평가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실무상 법적 안전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명된 업무에 한하여 준법지원인의 영업업무 수행을 인정할 수 있다.

상시적 진행 과정(process)으로서의 준법통제활동

준법통제기준에 담겨야 하는 준법통제활동은 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준법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준법점검 및 보고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준법통제활동이라는 것은 MTR(Monitoring–Testing–Reporting)로 요약되어지는 일련의 과정(process)이 진행형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부분이 무력화되거나 형해화 되면 준법통제활동은 전체적으로 의미를 잃는다. 준법지원인의 통제활동은 법적 위험의 평가와 관리로부터 시작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 영업부문을 상대로 다양한 검증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⁶⁾ 법적 위험의 종류, 크기나 발생빈도 등을 평가하고 부서별 또는 임직원이나 규제기관별로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법행위별로 기업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업무처리 자동화 장치나 정보보호장치와 같은 IT 통제시스템과의 연계도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이 평가된 법적 위험에 대한 관리지침이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처리상 발생가능성 있는 법적 위험을 인식시키고 해당 국내외 법령이나 준법통제기준상 지침, 회사내부 규정들을 숙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험 관리지침의 핵심이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13조). 이 같은 위험 관리노력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때 강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준법통제체제는 그 속성상 상시 점검에 의한 사전예방에 방점이 있는 만큼, 임직원들에 대하여 ‘법적 위험의 인식 및 탐지 능력’, ‘상시적 준법 자세’, ‘시기 적절한 위험 대처’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기업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운영할 것이나, 정기교육과 위험 관리



대상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실효적인 상시 상담제도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14조). 이 같은 위험평가 및 관리 상태를 바탕으로 준법지원인은 일상적인 준법지원 활동 및 자율점검시스템을 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정기 준법점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필요한 경우 수시(특별)준법점검도 실시된다.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준법지원인의 상시적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요사항의 결재 절차에 준법지원인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보면 준법지원인의 준법점검은 해당 부서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점검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서를 자율점검 단위(unit)로 나누어 자율점검과정을 map이나 diagram형식으로 도식화하고 자율점검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준법지원인의 정기 또는 특별 준법점검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준법점검을 함에 있어 필요

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9조 제2항). 준법지원인의 준법점검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 사회에 가감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이러한 준법점검 결과 보고는 기존 영업보고 라인에 부착하여 이루어지든 별도의 직보 라인이나 긴급 보고라인을 구축하여 운용하든 상관이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실질적으로 변형이나 가감 없이 보고되는 시스템인가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이 회사 내 상위 직급자에 해당하여 위법탐지사항이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되고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업무나 준법통제를 위한 일상적인 보고 및 지시전달시스템과는 별도로 법적 위험이 익명으로 제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⁷⁾ 기존의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위험사항이 제보된 경우 제보내용이 준법지원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 대응방안을 대표이사나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중지·개선·시정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표준준법통제기준 제19조). 이 같은 준법지원인의 긴급조치 권한은 준법통제기준에 명확히 밝혀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법통제체제에 대한 실효적인 평가시스템은 진화하는 준법경영의 예고

준법통제체제가 시스템적 결함이 있거나 변화하는 외부적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비탄력적 모습이 되어 버린다면 준법통제체제는 기업이 거짓 죄면에 빠지게 하는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에 회사의 전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효성 평가 시스템이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감사조직과 연계하여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유효성평가는 국내외 법령 및 감독규정성의 변화에 따라 회사 정책이나 절차가 업데이트되었는가 여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 여부, 점검 및 보고 체제의 독립성 여부, 각종 평가시스템의 구체성과 가시성 확보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⁸⁾ 이러한 실증적 평가를 위하여 기업들은 유효성 평가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년 이를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목록은 준법통제기준의 주요 사항별로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예를 들어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준법통제체제 작동의 감독 및 체제 유효성평가 등으로 나누어 각각 세부적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설문 답변을 토대로 체제의 운용상황을 검토한 뒤, 평가회에서 논의된 체제의 결함이나 운용상 장애 등을 연간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보게 된 상법의 역할

이 글과 함께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운용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독자들이 상법이 상정하고 있는 준법통제모델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상법이 경영 위험관리 프레임 속에서 내부통제를 바라보면서 기본 법제의 틀을 고안하여야 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 법령의 체계상 상사기본법인 상법의 제542조의13은 기업의 위험관리 법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이다.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13이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체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기업들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각종 특별법상 관련 법제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의 모색에 있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상법 제542조의13의 직접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부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며 그 실무적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 하위 규정들까지도 정치하게 정비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⁹⁾

- 6) 위험 평가를 위하여 질문지 등을 활용하거나 위험의 가치·손실 분포·사후 검증 등에 관한 확률적 분석 그리고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분석·벤치마킹 등의 기법 등을 동원할 수 있다(Richard M. Steinberg지음·노동래 옮김, 거버너스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연암사, 2013, 174~175면 참조).
- 7) 미국의 회계개혁법으로 불리는 The Sarbanes–Oxley Act는 상장회사가 피용자의 재무와 회계사항에 관한 익명제보를 처리할 절차를 반드시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ection 301).
- 8) Martin T. Biegelman 지음·노동래 옮김, 컴플라이언스–윤리 준법 경영의 성공전략, 연암사, 2008, 323~325면 참조.



AJ 네트웍스

AJ네트웍스는 물류용 파렛트, IT 기기, 고소장비 등을 렌탈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 종합 렌탈 임대전문 기업이다. 지난 2013년 12월 아주LNF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거듭난 AJ네트웍스는 AJ렌터카, AJ토탈, AJ파크, AJ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고객 Needs에 최적화된 렌탈서비스 제공

파렛트(pallet)는 물품을 하역 · 수송 · 보관하기 위해 단위묶음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받침대이며, 파렛트 렌탈 시스템(pallet rental system)은 파렛트를 이용하여 상품의 유통활동에 있어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중간 하역작업 없이 일정한 방법으로 수송 ·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파렛트 렌탈은 AJ네트웍스의 핵심 사업으로 연매출 638억원 수준이며, 2007년 시장진

Info

- 대표이사 반채운
- 설립년도 2000년 2월 10일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 상장일 2015년 8월 21일
- 업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웹사이트 www.ajnet.co.kr



선진국 시장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렌탈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AJ네트웍스는 앞으로 B2B 경쟁력은
물론, B2C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반채운 대표이사



출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다수의 식품 제조사와 유화업체 등
총 7만8000여 곳에 파렛트를 렌탈하고 있다.

고소장비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높은 곳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로, 각종 국책 대형공사 및 반도체, LCD
생산업체들의 라인증설 등으로 인하여 관련 장비의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빠르게 렌탈화 된 품목이다.

AJ네트웍스는 4,000여대의 고소장비를 보유한 점유율 1위 업체
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산업 현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
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도 AJ네트웍스의 장비가
쓰이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IT 렌탈은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복합기,
공기청정기 등 기업에서 쓰는 IT 기기를 렌탈하는 서비스다. AJ네
트웍스는 IT 기기 렌탈을 비롯해 A/S, 유지보수, 자산관리 등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업에 가까운 파렛트, 건설 현장 작업과 연계돼 있는 고소장비,
범용성이 중요한 IT 기기 등 렌탈 품목의 성격에 따라 운용방법 및
관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AJ네트웍스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조직인 '렌
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B2C 진출을 통해 렌탈 전문 기업으로 도약

AJ네트웍스는 상장을 통해 그동안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하던
사업 구조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현재 영위하는 렌탈 사업에서 범위를 넓혀 제품을 직접 판매하
는 영역까지 진출하고자 한다.

선진국 시장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렌탈 시장에서 안정적
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AJ네트웍스는 앞으로 B2B 경쟁력은
물론, B2C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렌탈, 일본의 오릭스와 같은 렌탈 전문 기업으
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AJ네트웍스는 경쟁력 극대화 및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



01

롯데제과, 현장경영을 통한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강화

롯데제과는 전국의 파트너사를 방문해 현장 일선을 둘러보고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경영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롯데제과 김용수 대표이사는 7일 파트너사 3곳을 방문, 현장일 선을 둘러보았다. 김대표는 이날 파트너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롯데제과는 2013년에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협약

을 체결한 이후 2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30억원을 들여 파트너사가 필요한 설비를 대여해주고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하반기에는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대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 동반성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롯데제과는 2013년부터 경제혁신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산업혁신운동3.0'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년 1억원 규모로 4개 이상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이 외에도 롯데제과는 파트너사 임직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롯데인재개발원과 함께 '동반성장아카데미'를 개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아카데미를 통해 파트너사가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식품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의 품질관리와 식품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생경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02

기아자동차, 휴가대신 아프리카 봉사활동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리마(Salima), 릴롱궤(Lilongwe)에서 청소년 교육 및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돋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기아차 임직원 봉사단은 총 24명으로 국내외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 선발됐으며, 임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해 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여름휴가 대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진정성을 더했다. 주요활동은 청소년 교육 지원, 봉고트럭을 활용한 이동 교육 지원, 지역주민 자립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기아차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바가모요 지역에서 3일 슈쿠루 주마나네 쿄암보 탄자니아 교육부장관, 하디자 멕체카 탄자니아 교육부 부위원장, 주베리 엠 사마탐바 지방행정부 차관보, 드윌라 바가모요 군수를 비롯해 현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번째 그린 라이트 스쿨 개교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기아차는 탄자니아 바가모요 지역에서 그린 라이트 중학교를 개교를 시작으로 창업기술 교육 훈련, 자립지원 사업 추진, 인권 개선 교육, 건강검진 지원 등 단순히 인프라를 제공하는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03

효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 개최

효성은 14일 한강 세빛섬에서 '함께일하는재단'과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을 열고 「ODS 가족문화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마을무지개」 등 3개 사회적기업에 사업비용 총 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효성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취업 기회가 적은 이주근로자나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효성과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6월부터 총 14개 다문화가정 사회적기업들을 심사해 3개 회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효성은 사업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도록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을 돋는다.

한편, 효성은 다문화가정 사회적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적정기술·의료봉사 등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인과 만나고 있다. 지난 8월 3일 발대식을 가진 대학생 적정기술 봉사단 '효성 블루챌린저'는 8월 말 베트남에서 일주일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미소원정대'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국경 없는 환자 돌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04

삼성SDS, 파트너사와 相生위해 30년 사업 노하우 지원

삼성SDS는 18일 잠실에 위치한 삼성SDS타워에서 8개 파트너사와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방법론 오픈 협약식을 개최했다.

삼성SDS 개발방법론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사업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표준화한 핵심 자산이다.

삼성SDS 상생협력실장, 품질보증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8개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삼성SDS가 파트너사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 원활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삼성SDS는 품질의 우수성, 삼성SDS와의 협력관계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방법론을 공유할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삼성SDS 개발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금번을 포함하여 총 26개사다.

삼성SDS는 파트너사들의 활용 빈도가 높은 프로젝트 관리를 비롯한 5개 방법론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 구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방법론의 절차와 템플릿을 제공하고, 파트너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방법론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파트너사의 기술력 강화와 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05

강원랜드, 지역 취약계층 대상 '희망 일자리 사업' 전개

강원랜드는 24일 함백복지관 시청각실에서 고한, 사북, 남면지역 취약계층 55명을 선발해 '희망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정선지역자활센터와 함께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잡석, 잡초제거 등 단순 업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고한시장 벽화거리 조성, 하이원 운탄고도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참가자들은 주5일 근무와 4대 보험을 보장받게 되며 11월 말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참가자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노후생활강좌를 개설해 사업의 내실을 높였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상하반기로 추진 중이며 작년까지 총 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07

S-OIL, '10년지기' 소방가족 지킴이

故 장복수 소방위(서울 광진소방서)는 2010년 12월 3일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사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타고 있던 구조선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러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장 소방위의 딸 윤하(박달초 6) 양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S-OIL은 윤하양에게 올해로 5년 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S-OIL은 윤하양과 같은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년째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 S-OIL은 26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S-OIL 순직소방관 유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S-OIL 김동철 수석부사장(CEO Deputy), 종양소방본부 조송래 본부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홍봉 회장과 소방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녀 89명에게 학자금 2억 1천만원을 전달했다. S-OIL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한 순직소방관 유자녀들이 슬픔을 딛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10년째 978명 학생들에게 28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06

두산중공업, 2학기 '두산 사랑나눔 참고서' 전달

두산중공업은 25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창원·서울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64곳에 초·중등용 참고서 5,315권(29종)을 전달했다.

올해로 5년 째를 맞는 두산중공업의 참고서 지원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연 2회씩 매 학기마다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학기 수혜 인원은 1천 600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두산중공업은 '청년에너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서 전달식을 마련했다.

두산중공업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청년에너지프로젝트는 아동에서 청년에 이르는 인재의 성장과정별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마이 드림 청소년 진로체험단 운영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지원을 비롯해 창원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 및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08

한국전력, 애뉴얼리포트 Vision Awards 대상 수상

한국전력은 美 LACP가 주관한 '2014 Vision Awards 애뉴얼리포트 대회'에서 대상(Platinum Awards)을 수상하였다. Vision Awards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어워드로,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해 세계 유수 기업 및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의 애뉴얼리포트를 평가하며, 15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25개국 약 1,0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경쟁을 펼쳤다.

한국전력의 애뉴얼리포트는 심사위원 총평에서 "디자인과 탄탄한 구성이 인상적이며,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100점 만점에 99점으로 전체 참가 기업 중 Top 1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기업 중 4위,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한국전력은 고객과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매년 애뉴얼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상한 애뉴얼리포트는 한전의 New Vision인 "Smart Energy Creator, KEPCO"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에너지의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표현하였다.





AJ네트웍스 신규상장

2015. 8. 21

AJ네트웍스(주)가 주권을 신규상장하고 본회 회원사로 가입하였다. AJ네트웍스(주)는 파렛트, IT기기, 고소장비 등 산업장비 임대로 성장해온 B2B 전문 렌탈기업이다. AJ네트웍스(주)가 정회원이 되면서 본회 정회원은 732개사가 되었다.



제184차 상장회사감사회 조찬강연

2015. 8. 27.

63컨벤션센터 주니퍼룸에서 오동열 마인드힐 클리닉 원장을 초청하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하였다. 동 강연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최하였다.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상사판례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참석

2015. 8. 21.~ 22.

본회 정우용 전무는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상사판례학회에서 공동 개최한 '상사법 분야의 최근 관심 법제와 그 해결방안' 하계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동 학술대회에서 '복수(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에 대하여 정 전무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상장회사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2015. 8. 28.

본회 김진규 상근부회장은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다. 김 부회장은 동 토론회에서 정보제공자인 상장회사의 편익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사전 예방으로의 감리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재무제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K-IFRS 실무중심 연결재무제표 이해와 작성 특별연수

2015. 8. 18 ~ 20. 총 2일, 21시간

기업의 회계 및 재무업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PC를 활용하여 직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주요 점검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21회 공시전문인 인증과정

2015. 8. 19 ~ 21. 총 3일, 17시간

기업의 공시업무 실무책임자 및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례중심의 공시 실무를 비롯하여 공시전문인으로서 알아야 할 회계지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업무 실무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정

재무제표 작성능력 향상을 위한 K-IFRS 입문과정

2015. 8. 24 ~ 25. 총 2일, 16시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초급실무자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거래에 대해 K-IFRS에 기초한 분기방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K-IFRS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제40회 기업내부감사사 양성과정

2015. 8. 24 ~ 28. 총 5일, 37시간

내부감사 분야에 대한 이론과 법규를 비롯하여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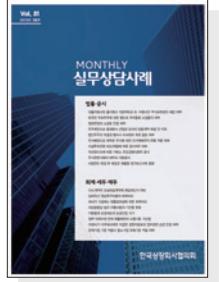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교육 서비스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BGF리테일(8.5), LIG넥스원(8.19)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맞춤형교육은 상장회사 관련 법규 및 공시 · 회계에 대한 현안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필요에 맞추어 실시하는 무상 교육서비스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교육문의 : 회원팀(02-2087-7181~5)



이달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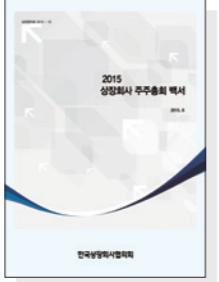
Monthly 실무상담사례 Vol. 31 (2015년 8월호)

법률·공시

- 피출자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취득과 모·자회사간 주식보유금지 해당 여부
- 외국인 주요주주에 대한 별도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여부
- 정관변경의 소급효 인정 여부
- 주주제안으로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전 자위
- 법인주주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개최 필요 여부
-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여부
- 시설투자관련 MOU체결에 따른 공시의무 여부
- 자산양수도에 따른 거래소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 주식관련사채의 취득과 지분공시
-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로 제출할 정기보고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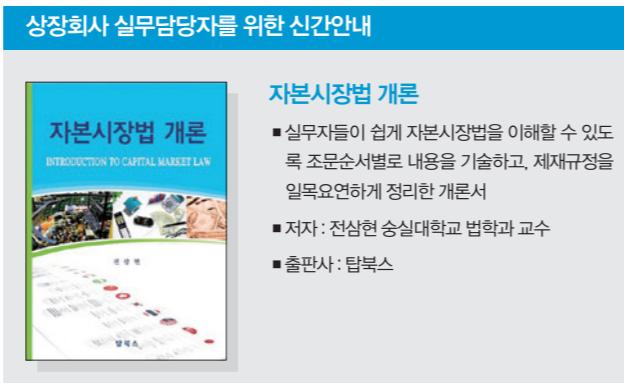
회계·세무·재무

- 리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차자산 원상복구비용의 회계처리
- 회사가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
- 외감법령상 법규 이행사항의 기간별 분류
- 지분증권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 일부 미회수된 잔여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자회사가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업무관련 손금 인정 여부
-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 여부



2015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개최된 유기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개최현황 및 주주총회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



자본시장법 개론

- 실무자들이 쉽게 자본시장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별로 내용을 기술하고, 제재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개론서
- 저자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출판사 : 탑북스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 해설 ⑧	28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 해설 ③	32
기업공시 유의사항 ④	36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 실적	38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45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48

IFRS 적용실무 해설

89

기업의 주가에 기초하지 않은 현금결제 성과보상

기준서 제1102호는 주식기준보상을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 포함)의 대가로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그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을 기업의 지분상품인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러한 보상이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대가가 기업의 주가 또는 공정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주가의 달성이나 기업의 주가와 다른 기업 주가를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을 시장(성과)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지급받게 되는 현금보상금액이 기업의 주가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예를 들어 EBITDA 또는 당기순이익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경우라면 이는 주식기준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어떤 종업원보상은 종업원 또는 기업이 현금 지급이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서 제1102호는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현금 지급조건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즉 보상금액이 주가에 기초하여 산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선택형 보상거래가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1102호의 결론도출근거(문단 BC256)에서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행사 대신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현금결제방식의 금액은 고정된 것이거나 변동가능한 것일 수 있고 변동가능한 경우 기업의 주가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현금보상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이를 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종업원에게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회사는 2년 근무를 조건으로 2년후 회사의 주가가 현재 주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 종업원에게 용역제공기간 원료시점 회사의 EBITDA의 일정비율로 산출한 현금을 지급

받거나 또는 2년의 추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동 현금지급금액의 2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종업원 보상을 제공하였다.

주식으로 결제되는 보상과 현금결제보상을 선택할 수 있게 부여된 종업원보상이지만 현금결제금액이 주가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현금결제부분은 단독으로 제공되었다면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결제형과 혼합하여 제공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는 종업원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보상 이므로 이를 부채요소(종업원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종업원의 주식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EBITDA 기준의 현금결제요구권에 대하여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회사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할 부분으로 자본요소로 회계처리한다.

종업원 보상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의 적용뿐만 아니라, 특히 연결실체 내 기업간 보상거래의 경우 기준서 제1102호는 각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서계원 회계사 (02-3781-3137, kwseo@samil.com)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사례 1

항공사인 A사는 B사에게 항공기를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인 15년 동안 리스로 제공하고, 원래의 리스와 동일한 형식과 조건으로 동자산을 역리스로 이용한다. A사와 B사는 서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동금액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다.

사례 2

C사는 D사에게 본사 건물을 법적으로 매각하고 동일한 건물을 다시 리스하여 이용한다.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D사는 해당 건물을 C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시 D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수취한 리스료금액과 매입가격 및 반환가격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매입가격에 연간 리보금리에 2%를 더한 수익을 D사가 얻을 수 있게 하는 금액이다.

이 일련의 거래들은 어떻게 회계처리되어야 하는가?

사례 1에서, 각각의 리스의 형식, 조건 및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약정대상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약정이전과 동일하다. 더구나 서로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서로 상쇄되므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약정의 실질은 아무런 거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A사는 이러한 약정 이전과 동일하게 항공기를 계속해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사례 2에서, 매도자이자 리스이용자인 C사는 해당 거래 이전에 해당 건물의 전체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해진 금액으로 약정대상 자산이 반환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거래 이후에도 그 권리를 계속하여 유지한다. 즉, 약정대상건물의 소유에 따른 C사의 위험과 보상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약정의 실질은 C사가 약정대상건물을 담보로 현금을 차입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최종잔액은 리스기간말에 상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판매된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리스기간 동안에만 판매자가 보유한다. 이 사례는 그러한 판매후리스가 아니며, 그 실질에 따라 차입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는 상기와 같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해석서의 주요 원칙은 법적 형식이 리스인 거래를 포함하는 일련의 거래는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에 설명한 사례에서 A사는 운용목적으로 해당 항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역리스 없이는 원래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IFRS 업무 이해를 돋기위해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에서 IFRS 적용실무를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 (02-2087-7141~2,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서는 약정에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다음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 기업이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위의 사례에서 A사와 C사는 약정대상 자산인 항공기와 건물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다.
- 약정의 주된 이유가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세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례에서 B사와 D사는 명백하게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 행사를 거의 확실하게 만드는 조건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앞의 예에서 A사는 항공기의 전체 내용연수동안 역리스로 자산을 사용하고, C사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해당 건물을 반환받게 된다.

[해석서 제2027호 문단 5]

이처럼 법적으로는 리스인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리스를 포함하지 않아 리스로 회계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리스거래와 함께 고려되어 체결된 거래들의 경우 그러한 약정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리스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 (02-3781-9912, yklee2@samil.com)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취득자의 식별

'사업결합'이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다.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자를 식별해야 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 된다.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사업결합이 되는 경우는 보통 현금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된다.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가 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어, 법적인 취득자와 회계상 취득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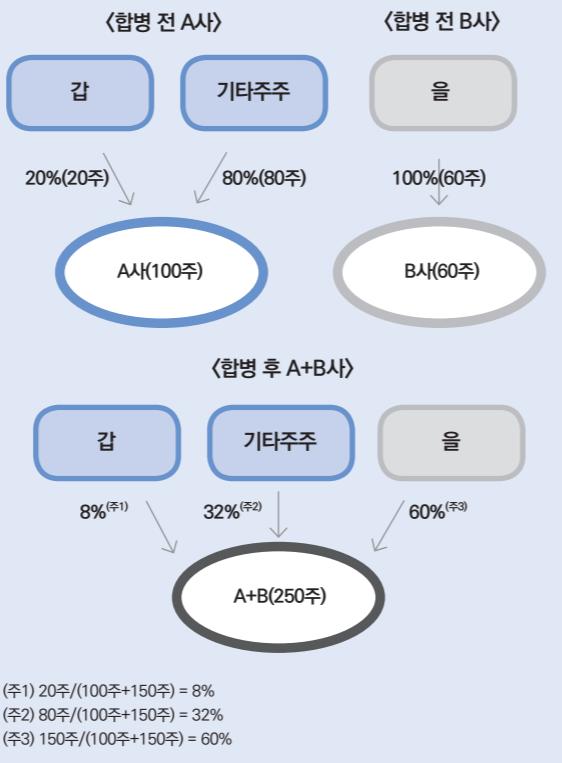
역취득이며, 보통 역합병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역취득은 영업력이나 수익력이 높은 비상장기업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상장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에 역취득이 되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2015년 9월 30일에 상장사인 A사와 비상장사인 B사는 합병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적으로는 상장사인 A사가 취득자가 되어 합병 후 A법인이 존속법인이 된다.

합병 전 A사의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최대주주인 '갑'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5%미만의 소수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합병 전 B사의 발행주식수는 60주이며, '을'이 100%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합병으로 A사는 B사의 보통주 각 1주과 교환하여 2.5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B사의 주주 '을'에게 A사 주식 150주(60주X2.5)를 발행하였다. 합병 후 결합기업(A+B)에 대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상기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A와 B중 누구인가?

지배력을 획득하는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지침을 사용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결합기업('A+B')을 B사의 주주인 '을'이 60%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간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취득한 주주인 '을'이 속한 B사가 취득자가 된다.

그러나 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을 고려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1)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 의결권 :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는 주주가 속한 기업이 보통 취득자가 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의결약정과 옵션, 주식매입권이나 전환증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

(2) 결합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소수의결지분의 존재 : 결합기업의 중요한 의결지분을 갖는 특정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자는 보통 결합기업에 대하여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소유주(또는 조직화된 집단)가 속한 기업이 된다.

(3) 결합기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 취득자는 보통 결합기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지명 또는 임명하거나 해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속한 결합참여기업이다.

(4) 결합기업 경영진의 구성 :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이 결합참여기업의 이전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경우, 취득자는 보통 그 경영진이 속한 결합참여기업이다.

(5) 지분교환의 조건 : 취득자는 보통 다른 결합참여기업이나 기업들의 지분에 대하여 결합 전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할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합참여기업이다.

또한 자산, 수익 또는 이익의 상대적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기업이 보통 취득자가 될 것이다.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의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히 법적으로 취득하는 기업이 회계상 취득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결합 구조에 따라서 취득자 식별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작성자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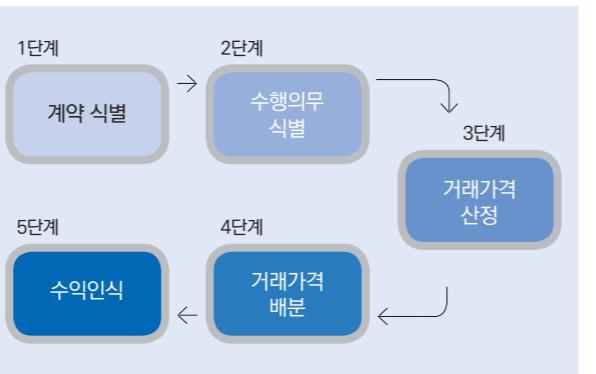
엄경순 회계사 (02-3781-9791, kseom@samil.com)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 해설 ③

거래가격의 산정과 배분

수익 인식의 5단계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1115)의 핵심 원칙은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거래가격)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친다.



지난 호에서는 수익 인식의 5단계 중 1단계 '고객과의 계약식별'과 2단계 '수행의무식별'을 소개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과 4단계 거래가격을 계약의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 수익 인식의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금액을 말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업이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거나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 금액은 할인, 리베이트, 환불,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 등과 같은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대가의 변동 가능성은 계약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사업 관행이나 공개한 경영방침 등에 근거하여 고객이 당연히 기대할 수도 있다. 변동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금액을 추정한다.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에 대한 이해를 돋기위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기준서의 주요 내용 해설을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K-IFRS 1115호의 공개초안이나 교육자료 등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서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이메일 (t3@kasb.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변동대가 추정]

[Q] 기업은 주문제작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속대로 20X7년 3월 31일에 건설을 완성하면 2,000,000원을 대가로 받지만,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지연일수에 대해 매일 10,000원씩 차감되며, 건설을 조기에 완공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으로서 앞당긴 만큼 매일 10,000원씩 가산된다. 자산이 완성되면, 제삼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계약에 규정된 척도에 기초하여 평점을 매길 것이다. 자산이 특정 평점을 받으면 기업은 특별장려금 1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적절한 방법은?

[A] 자산 완성시점에 따라 생기는 위약금이나 장려금과 관련된 변동대가($2,000,000원 \pm 10,000원 \times 일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댓값 방법을 사용한다. 예상되는 위약금과 장려금에 대한 가능한 결과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치에 각각의 확률을 곱한 기댓값이 가장 적절한 추정치라고 보았다. 예상되는 특별장려금에 대한 결과치는 두 가지[100,000원이나 영(0)원]뿐이기 때문에 둘 중 가능성이 더 높은 값이 가장 적절한 추정치라고 보았다.

이렇게 추정한 변동대가를 모두 그대로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인식한 후에 변동대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유의적인 금액을 되돌리지(환원되자)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반영한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나중에 완성시점에 유의적인 금액을 감액(환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변동대가 추정액은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다. 대가 금액이 기업 외부 요인의 영향에 민감하거나 대가 금액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슷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기업의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인식된 수익의 환원 가능성이 높거나 환원 정도가 커질 수 있다.

[사례 2 : 계약 대상 수수료]

[Q] 기업은 5년 동안 자산운용 용역을 제공하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각 분기 말에 운용 대상인 고객 자산에 기초하여 분기별 운용수수료 2%를 받는다. 20X8년 3월 31일에 운용하는 고객의 자산은 1억원이다.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는?

[A] 기업은 약속된 대가가 시장에 달려있고 따라서 기업의 영향력 밖에 있는 요소에 매우 민감하다고 본다. 계약 개시시점에 운용수수료의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면 기업은 인식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기업은 보고일마다 거래가격 추정치를 갱신하는데 각 분기 말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제 운용수수료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20X8년 3월 31일에 운용하는 고객의 자산이 1억원이면 분기 운용수수료와 거래가격은 2백만원이 된다. 기업은 분기 마다 분기에 제공된 구별되는 용역에 분기별 운용수수료를 배분한다. 수수료가 특히 해당 분기에 이전되는 용역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되고 이 용역은 다른 분기에 제공되는 용역과 구별되어 배분 결과가 거래가격 배분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20X8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1분기의 수익으로 2백만원을 인식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 금액과 즉시 현금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의 기간 간격, 일반적인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약속된 대가 금액에서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사례 3 : 선수금과 할인율]

[Q] 기업은 자산을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 후에 고객에게 이전될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두 가지 지급 방법(2년 후 5,000원을 지급하거나 계약에 서명할 때 4,000원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에 서명할 때 4,000원을 지급하기로 선택한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A] 기업은 시장의 일반적인 이자율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시점과 기업이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때문에,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기업의 충분차입 이자율은 6%이다.

(1) 계약 개시시점에 받은 4,000원을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현금	4,000원	계약부채	4,000원
----	--------	------	--------

(2) 계약 개시시점부터 자산을 이전할 때까지 2년 동안 기업은 약속된 대가 금액을 조정하고, 2년 동안 4,000원에 대한 이자를 6%씩 인식하여 계약부채를 증액한다.

이자비용	240원	계약부채	240원
이자비용	254원	계약부채	254원

(3) 자산 이전에 대해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부채	4,494원	수익	4,494원
------	--------	----	--------

고객이 현금 외의 대가를 약속한 계약에서는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금액 공제나 쿠폰 상품권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거래가격의 감액(수익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 수익 인식의 4단계 : 거래가격 배분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또는 이행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한다.

[사례 4 : 배분 방법론]

[Q] 기업은 제품 A, B, C를 판매하고 100원을 받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각각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 A를 별도로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제품 B와 C의 개별 판매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고 각 제품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방법은?

[A]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해, 제품 B는 비슷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경쟁자의 시장 가격을 참조하고 기업의 원가와 이윤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제품 C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가산하였다(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이러한 추정을 할 때 기업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많이 사용

하고 다음과 같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150원)가 약속된 대가(100원)를 초과하기 때문에 고객은 제품 둘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는 것이다. 전체 할인이 특정 제품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할인을 제품 A, B, C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면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제품	개별 판매가격	개별 판매가격 산정/추정 방법	배분된 거래가격
제품 A	50원	직접 관측	33원 (50원/150원 × 100원)
제품 B	25원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17원 (25원/150원 × 100원)
제품 C	75원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50원 (75원/150원 × 100원)
합계	150원		100원

거래가격에 계약의 일부분에만 관련되는 할인액이나 변동대가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수행의무에만 배분해야 할 수 있다.

[사례 5: 할인의 배분]

[Q] 기업은 제품 A, B, C를 개별 판매하고, 각각의 개별 판매가격은 40원, 55원, 45원이다. 제품 B와 제품 C의 경우 함께 판매할 때에는 60원에 판매한다. 기업은 제품 A, B, C를 판매하고 100원을 받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각각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A] 계약에서는 거래 전체에 40원의 할인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제품 B와 C를 함께 60원에, 제품 A를 4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 B와 C를 이전하는 약속에 전체 할인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기업이 같은 시점에 제품 B와 C의 통제를 이전한다면 기업은 실무적으로 그 제품의 이전을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즉 제품 B와 C를 고객에게 동시에 이전할 때 기업이 단일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60원을 배분할 수 있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계약에 기업이 서로 다른 시점에 제품 B와 C의 통제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면 배분금액 60원은 다음과 같이 제품 B(개별 판매가격 55원)와 제품 C(개별 판매가격 45원)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에 개별적으로 배분한다.

제품	배분된 거래가격
제품 B	33원 (55원 ÷ 총 개별 판매가격 100원 × 60원)
제품 C	27원 (45원 ÷ 총 개별 판매가격 100원 × 60원)
합계	60원

다음 호에서는...

다음 호에서는 각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이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 진행률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익 인식의 마지막 단계인 ‘수익 인식’의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

기업공시 유의사항 8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5.8.20.개정)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 및 적용

2015.8.20.자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되어 2015.9.3. 이후의 제출분부터 개정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제출(부칙)

2 개정 취지 및 배경

기업들의 공시의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올 바른 투자자보호 관행을 정착시켜 일반 투자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1) 소규모기업(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정기보고서 기재항목 간소화

- ① '제1-1-2조(용어의 정의)'에 소규모기업을 추가하고,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등과 관련하여 소규모기업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중 투자자보호에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 항목(5가지)을 선정
 - ② 소규모기업(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에게 정기보고서 등의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

〈관련 조문〉

-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제1-1-2조(용어의 정의)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제4-2-8조(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제5-1-1조(요약재무정보)
제5-1-2조(요약연결재무정보)
제5-4-1조(재무제표)
제7-4-2조(타법인 출자현황)

(2) 증권신고서 서식 등과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중 '자본금 변동현황'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

〈관련 조문〉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증권신고서(파생결합증권)
〈별지 제9호 서식〉 증권신고서(합병등)
〈별지 제11호 서식〉 일괄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
〈별지 제15호 서식〉 소액공모공시서류
〈별지 제16호 서식〉 소액공모공시서류(파생결합증권)
〈별지 제18호 서식〉 소액공모공시서류(합병등)
〈별지 제19호 서식〉 호가증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별지 제35호 서식〉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3) 사채관리계약의 투자자보호 특약 이행실태 기재

- ① 회사채 발행회사가 사채관리계약상 투자자 보호 특약 이행실태를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관련조문〉

-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제5-5-5조(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4) 준법지원인 선임현황 기재

- ① 준법지원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준법지원인등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기재

〈관련조문〉

-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제7-2-3조(준법지원인 등)

(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증권신고서에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재

- ① 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발행하는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 핵심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기위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재를 신설

〈관련조문〉

- 〈별지 제1호 서식〉 증권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직원의 성명 기재 생략

-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시 발행주식총수의 0.1% 미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 기재를 생략

〈관련조문〉

- 〈별지 제56호 서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7)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서식 본문에 보유목적 기재

- ①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확인서(경영참여목적 없음)를 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변경

〈관련조문〉

- 〈별지 제45호 서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8)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전환)조건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 ①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전환)조건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충실한 정기보고서 기재를 위해 작성예시를 추가

〈관련조문〉

-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제11-2-6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별지 제38-6호서식〉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유무상증자 결정

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안내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안내 및 다운

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접속 후 상단의 업무자료 - 공시업무에서 확인

나. 닉트(DART) 홈페이지

- 닉트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접속 후 상단의 공시업무에서 확인

다. 닉트(DART)접수 시스템

- <http://filer.fss.or.kr>에 접속 후 왼쪽 하단의 기업공시 안내자료 - 기업공시 안내자료 바로가기에서 확인

(2) [기업공시 실무안내] 및 [기업공시 실무 FAQ] 책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는 기업공시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매년 [기업공시 실무안내]와 [기업공시 실무FAQ] 책자를 발간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올해 11월에 발간될 [기업공시 실무안내]와 [기업공시실무 FAQ]에 반영될 예정

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공시업무 이해를 돋기위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
의문사항 또는 현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02-2087-7141~2, plan02@klca.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 실적

1 2015사업연도 상반기 개별(별도) 실적(K-IFRS)

1. 분석대상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보통주권 상장법인 705사 중 77사 를 제외한 628사

구분	회사수	비 고
반기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705사	
분석제외법인	77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재무제표 제출유예 9사 - 결산기변경 1사 - 분할/합병 16사 -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3사 - 분석항목 일부 미기재 등 48사 (금융업)*
분석대상법인	628사	

* 금융업은 영업수익 등 일부항목 미기재로 인해 분석 제외

→ 분석대상기업 628사는 모두 제조·건설·서비스업 해당

〈 K-IFRS에서의 재무제표 종류 〉

- 연결재무제표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함으로써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연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지배회사가 작성함
- 개별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재무제표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2015년 상반기실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내용에 대해 서는 본회 회계제도팀 (02-2087-7190~5)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 2015사업연도 상반기 개별(별도) 실적

가. 전체 실적

1) '15사업연도 상반기 누적(1~6월) : 전년 동기 대비

- (영업) 전년 동기 대비 매출·영업이익 및 순이익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 및 순이익 각각 5.8%, 2.1% 및 5.9% 감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8%, 매출액 순이익률은 5.2%를 기록

〈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 K-IFRS 개별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5,707,091	5,377,469	△326,622	△5.8
영업이익	320,300	313,659	△6,641	△2.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7,645	350,796	△6,848	△1.9
순이익	294,908	277,520	△17,388	△5.9
매출액영업이익률	5.61	5.83	0.22%p	-
매출액순이익률	5.17	5.16	△0.01%p	-

-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11.7%) 제외시, 매출액 감소는 동일하지만,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뚜렷하게 개선

- 매출액 4.8% 감소,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각각 17.0%, 7.7% 증가

〈 삼성전자 제외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 K-IFRS 개별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4,975,352	4,735,054	△240,298	△4.8
영업이익	209,811	245,414	35,603	1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0,347	275,398	35,051	14.6
순이익	200,718	216,237	15,519	7.7
매출액영업이익률	4.22	5.18	0.97%p	-
매출액순이익률	4.03	4.57	0.53%p	-

- (재무) '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78.5%로 '14년말 대비 2.0%p 감소

〈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 K-IFRS 개별 재무상태 〉

(단위 : 억원, %, %p)

구분	2014년말	2015년 6월말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14,133,886	14,295,123	161,237	1.2
부채총계	6,303,484	6,286,222	△17,261	△0.3
자본총계	7,830,403	8,008,901	178,498	2.3
부채비율	80.50	78.49	△2.01%p	-

2) '15사업연도 2분기(4~6월) : 1분기(1~3월) 대비

■ (영업) 1분기 대비 매출, 이익 및 수익률 모두 감소

• 1분기 대비 매출액 1.3% 영업이익은 14.4% 및 순이익 32.1% 감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4%, 매출액 순이익률은 4.2%를 기록

〈 12월 결산법인 2014년 2분기 K-IFRS 개별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2,705,741	2,671,728	△34,013	△1.3
영업이익	168,976	144,684	△24,292	△14.4
법인세비용차감순이익	205,760	145,036	△60,724	△29.5
순이익	165,256	112,264	△52,992	△32.1
매출액영업이익률	6.25	5.42	-0.83%p	-
매출액순이익률	6.11	4.20	-1.91%p	-

나. 업종별 실적

1) '15사업연도 상반기 누적(1~6월) : 전년 동기 대비

■ (매출) 6개 업종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11개 업종은 감소

* (매출증가) 의료정밀, 의약품, 섬유의복,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운수창고(6개업종)

* (매출감소) 화학, 철강금속, 전기기계, 유통,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 건설, 종이목재, 기계, 운수장비(11개업종)

■ (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한 통신, 기계를 비롯한 8개 업종은 순이익이 증가

• 한편, 종이목재, 섬유의복, 운수장비 등 9개 업종은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건설, 운수장비는 적자전환

〈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상반기 업종별 순이익 증감 현황 〉

흑자증가	전기기계(1,912.67% ↑), 의료정밀(215.77% ↑), 화학(61.64% ↑), 의약품(13.37% ↑), 서비스업(6.98% ↑), 철강금속(6.23% ↑)
흑자전환	통신, 기계
흑자감소	종이목재(73.72% ↓), 섬유의복(68.56% ↓), 운수장비(67.75% ↓), 비금속광물(48.71% ↓), 전기전자(13.61% ↓), 음식료품(2.20% ↓), 유통(0.05% ↓)
적자전환	운수창고, 건설

2) '15사업연도 2분기(4~6월) : 1분기(1~3월) 대비

■ (매출) 8개 업종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9개 업종은 감소

* (매출증가) 건설, 비금속광물, 의약품, 운수창고업, 음식료품, 기계, 섬유의복, 의료정밀(8개업종)

* (매출감소) 전기기계, 화학, 전기전자, 유통, 철강금속, 서비스, 운수장비, 통신, 종이목재(9개업종)

■ (순이익) 통신업, 전기기계업, 의료정밀, 화학, 철강금속 등 5개 업종은 순이익이 증가

• 한편, 섬유의복,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서비스업, 유통업, 전기전자, 의약품, 음식료품 등 8개 업종은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운수장비, 기계, 건설업 등 3개 업종은 적자전환 및 운수창고업은 적자지속

〈 1분기 대비 2015년 2분기(4~6월) 업종별 순이익 증감 현황 〉

흑자증가	통신업(330.67% ↑), 전기기계업(284.63% ↑), 의료정밀(157.62% ↑), 화학(87.86% ↑), 철강금속(57.78% ↑)
흑자전환	-
흑자감소	섬유의복(80.86% ↓) 종이목재(74.40% ↓) 비금속광물(53.01% ↓), 서비스(52.14% ↓) 유통(14.89% ↓) 전기전자(7.23% ↓) 의약품(4.30% ↓), 음식료품(2.06% ↓)
적자전환	운수장비, 기계, 건설
적자지속	운수창고

다. 흑·적자기업 현황

1) '15사업연도 상반기 누적(1~6월) : 전년 동기 대비

■ 분석대상기업 628사 중 개별기준으로 506사(80.5%)가 순이익 흑자, 122사(19.6%)가 적자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상반기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개별기준) 〉

흑자기업	적자기업	소계		소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436 (69.4%)	70 (11.1%)	506 (80.5%)		72 (11.5%)	50 (8.1%)
				122 (19.6%)	

2) '15사업연도 2분기(4~6월) : 1분기(1~3월) 대비

■ 분석대상기업 628사 중 개별기준으로 475사(75.6%)가 순이익 흑자, 153사(24.4%)가 적자 기록

〈 2015년 2분기(4~6월)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개별기준) 〉

흑자기업	적자기업	소계		소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401 (63.8%)	74 (11.8%)	475 (75.6%)		76 (12.1%)	77 (12.3%)
				153 (24.4%)	

2 2015사업연도 1분기 연결실적(K-IFRS)

〈 삼성전자 제외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 K-IFRS 연결실적 〉

(단위 : 억원, %)

1. 분석대상

-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보통주권 상장법인 579사 중 73사를 제외한 506사

구분	회사수	비 고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579사	
분석제외법인	73사	- 연결재무제표 제출유예 9사 - 결산기변경 1사 - 분할/합병 16사 -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3사 - 분석항목 일부 미기재 등 44사(금융업)
분석대상법인	506사	

2. 2015사업연도 상반기 연결실적

- 1) '15사업연도 상반기 누적(1~6월) : 전년 동기 대비
- (영업) '15년 상반기 연결매출액은 8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연결영업이익은 7.3% 증가한 반면, 연결순이익은 1.4% 감소

〈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 K-IFRS 연결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8,641,729	8,234,535	△407,194	△4.7
영업이익	488,220	523,703	35,483	7.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97,793	522,405	24,612	4.9
순이익	384,536	379,130	△5,406	△1.4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370,311	358,779	△11,532	△3.1
매출액영업이익률	5.65	6.36	0.71%	-
매출액순이익률	4.45	4.60	0.15%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란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말함

-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11.3%) 제외시 연결매출액 소폭감소하나, 수익성 개선은 뚜렷(개별분석과 유사)
 - 연결매출액 4.0% 감소, 연결영업이익 및 연결순이익 각각 19.2%, 11.8% 증가

구분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7,581,443	7,277,981	△303,463	△4.0
영업이익	331,459	394,930	63,471	19.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3,453	383,938	60,486	18.7
순이익	246,284	275,349	29,065	11.8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233,699	257,318	23,619	10.1
매출액영업이익률	4.4	5.4	1.0%p	-
매출액순이익률	3.3	3.8	0.5%p	-

- '15년 상반기말 연결부채비율은 124.64%로 2014년말 대비 2.52%p 감소

〈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K-IFRS 연결 재무상태 〉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말	2015년 상반기말	증감액	증감률
자산총계	21,184,943	21,644,292	459,349	2.2
부채총계	11,858,997	12,009,337	150,340	1.3
자본총계	9,325,946	9,634,955	309,009	3.3
부채비율	127.16	124.64	△2.52%p	-

- 분석대상기업 506사 중 연결기준으로 401사(79.2%)가 순이익 흑자, 105사(20.8%)가 적자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2015년 상반기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연결기준) 〉

흑자기업		적자기업		
흑자지속	흑자전환	소계	적자지속	적자전환
337 (66.6%)	64 (12.6%)	401 (79.2%)	59 (11.7%)	46 (9.1%)
				105 (20.8%)

- 2) '15사업연도 2분기(4~6월) : 1분기(1~3월) 대비

- (영업) '15년 2분기 연결매출액은 414조원으로 1분기 대비 1.5% 증가

- 1분기 대비 연결영업이익은 7.2%, 연결순이익은 12.6% 감소

〈 12월 결산법인 2015년 2분기 K-IFRS 연결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4,087,039	4,147,497	60,458	1.5
영업이익	271,626	252,077	△19,549	△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6,492	245,913	△30,580	△11.1
순이익	202,271	176,859	△25,412	△12.6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193,261	165,518	△27,743	△14.4
매출액영업이익률	6.65	6.08	△0.57%	-
매출액순이익률	4.95	4.26	△0.68%	-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란 지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지분율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말함

- 분석대상기업 506사 중 연결기준으로 391사(77.3%)가 순이익 흑자, 115사(22.7%)가 적자 기록

〈 2015년 2분기(4~6월) 흑자 및 적자기업 현황(연결기준) 〉

흑자기업		적자기업			
흑자지속	흑자전환	소계	적자지속	적자전환	소계
324 (64.0%)	67 (13.3%)	391 (77.3%)	62 (12.2%)	53 (10.5%)	115 (22.7%)

3 금융업 2015사업연도 상반기 실적(개별/별도 기준)

- 금융업 48사 중 7사*를 제외한 41사의 수익성은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개선

* 합병, 분할, 결산기 변경 등이 발생한 7사 제외

- 금융업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36.3%, 당기순이익 42.2% 증가

- 특히, 증권업은 영업이익 314.9%, 당기순이익 480.4% 증가

〈 12월 결산 금융업 2015년 상반기 K-IFRS 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증감액	증감률
영업 이익	은행	18,498	22,935	4,437 24.0
	보험	28,660	33,457	4,796 16.7
	증권	3,915	16,244	12,329 314.9
	기타	4,349	2,902	△1,448 △33.3
	합계	55,422	75,537	20,115 36.3
당기 순이익	은행	16,897	21,520	4,624 27.4
	보험	22,856	27,441	4,585 20.1
	증권	2,292	13,303	11,011 480.4
	기타	3,288	2,220	△1,068 △32.5
	합계	45,332	64,484	19,152 42.2

12월 결산 상장회사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1 조사개요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705개사 중 620개사
 - 결산기 변경, 분할·합병,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신규상장사 등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한 회사와 금융업 및 자본잠식회사 등 총 85개사 제외
 - 2015년 상반기말 현재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 조사방법
 - 2015년 상반기말 현재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 금액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하여 2014년말과 비교하였으며,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 금액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함.
- 개별기업(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업종은 한국거래소의 업종분류에 기초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기준(제조업의 경우 중분류)에 따른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상환해야 할 부채금액에 대한 자본금액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건전성·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임.

2 조사내용

-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123.08%로 2014년말 대비 2.4%p 하락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

- 부채총계는 1,213조 7,00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6% 증가
- 자본총계는 986조 1,448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15% 증가

이 자료는 본회에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회계제도팀 (02-2087-719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15년 상반기말	2014년 말	증감	증감률
부채총계	1,213,700,025	1,198,425,604	15,274,422	1.26
자본총계	986,144,801	955,100,995	31,043,806	3.15
부채비율	123.08	125.48	△2.4	-
평균부채비율*	153.59	172.48	△18.9	-

* 평균부채비율 = 회사별 부채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회사수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함 [Σ (각 회사 부채비율)/회사 수].

- 12월 결산법인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100% 이하' 구간이 348개사(56.1%)로 나타났으며, '200% 초과' 구간은 105개사(16.9%)로 나타남.

〈 2015년 상반기말 부채비율 분포 〉

(단위 : 개사, %)

부채비율 분포	회사수	구성비		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구성비	구성비		
50% 이하	180	29.0	33.84	30.39	
50% 초과 ~ 100% 이하	168	27.1	79.73	74.47	
100% 초과 ~ 200% 이하	167	26.9	148.70	144.74	
200% 초과	105	16.9	389.36	505.44	
전체	620	100.0	123.08	153.59	

* 평균부채비율 = 회사별 부채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회사수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함 [Σ (각 회사 부채비율)/회사 수].

※ <참고> 2014년말 대비 부채비율 분포

(단위 : 개사, %, %p)

부채비율 분포	2015년 상반기말		2014년말		증감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50% 이하	180	29.0	173	27.9	7	1.1
50% 초과 ~ 100% 이하	168	27.1	155	25.0	13	2.1
100% 초과 ~ 200% 이하	167	26.9	189	30.5	△22	△3.5
200% 초과	105	16.9	103	16.6	2	0.3
전체	620	100.0	620	100.0	-	-

■ 업종별 부채비율 현황

- 상승△ : (제조업) 가죽 · 가방 및 신발, 고무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 담배, 섬유제품, 의약품, 자동차, 화학 등 13개 업종
- (비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5개 업종

- 하락▽ : (제조업) 1차금속, 가구, 금속가공, 식료품, 의복, 전기장비, 전자부품, 페프 · 종이 등 10개 업종
- (비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운수업, 전기·가스, 출판 등 9개 업종

〈 2015년 상반기말 업종별 부채비율 〉

(단위 : 억원, %, %p)

업종*	회사수	총부채	증감률	총자본	증감률	부채비율	증감	평균부채 비율*
1차 금속	38	680,292	△2.6	761,946	0.2	89.3	△2.5	242.2
가구	6	3,192	△2.9	7,125	3.6	44.8	△3.0	76.3
가죽, 가방 및 신발	3	1,348	11.9	4,305	4.2	31.3	2.2	35.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9	135,588	6.7	109,353	4.4	124.0	2.7	117.8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9	8,560	0.5	10,405	4.7	82.3	△3.5	137.1
기타 기계 및 장비	26	364,595	1.6	174,687	△1.2	208.7	5.7	127.8
기타 운송장비	7	784,735	3.6	276,238	△12.9	284.1	45.2	232.9
기타 제품	1	1,851	11.3	2,129	0.2	86.9	8.7	78.3
담배	1	20,338	18.9	58,351	2.2	34.9	4.9	3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7,241	7.0	5,680	1.3	127.5	6.8	126.3
비금속 광물제품	19	72,523	11.0	77,442	9.8	93.6	1.0	98.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	21,136	4.2	26,066	0.7	81.1	2.7	85.8
식료품	31	206,259	0.9	198,780	4.3	103.8	△3.5	132.5
음료	5	43,889	5.5	42,238	0.7	103.9	4.7	97.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2,438	2.1	5,471	2.3	44.6	△0.1	5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4	58,517	9.5	89,125	4.3	65.7	3.1	74.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	66,810	△5.3	88,025	△2.8	75.9	△2.0	10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	1,392,107	5.8	1,241,894	4.5	112.1	1.4	155.6
전기장비	14	51,899	△1.2	37,201	2.5	139.5	△5.2	41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6	1,098,966	△5.5	2,313,158	4.1	47.5	△4.8	154.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3	54,905	1.8	58,391	12.4	94.0	△9.8	49.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9	48,786	1.3	43,560	1.3	112.0	△0.1	25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5	1,842,404	7.2	789,917	7.0	233.2	0.6	121.6
제조업	402	6,968,380	2.6	6,421,488	3.0	108.5	△0.4	155.7
건설업	27	598,095	2.7	285,362	0.4	209.6	4.6	149.6
광업	1	305	△0.5	230	△12.0	132.8	15.4	117.4
교육 서비스업	2	4,153	△1.9	8,980	1.5	46.3	△1.6	61.3
농업, 임업 및 어업	5	20,605	14.0	17,866	8.1	115.3	6.0	128.0
도매 및 소매업	55	868,211	0.7	711,092	2.8	122.1	△2.5	35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9,995	3.4	4,423	17.1	226.0	△30.1	19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7,706	△11.8	13,338	4.2	57.8	△10.5	81.4
숙박 및 음식점업	1	1,169	20.5	2,902	1.7	40.3	6.3	3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9,450	△5.2	33,114	1.8	28.5	△2.1	65.7
운수업	20	478,397	△0.7	150,610	8.3	317.6	△28.7	254.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1,516,443	△2.1	737,861	4.2	205.5	△13.3	15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	1,104,538	0.6	968,080	3.6	114.1	△3.4	11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543,567	△3.5	495,573	5.3	109.7	△10.1	9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5,985	2.8	10,529	1.3	56.8	0.8	56.0
비제조업	218	10,362,568	99.5	3,439,960	3.7	301.2	144.6	149.6
총합계	620	12,137,000	1.3	9,861,448	3.3	123.1	△2.4	153.6

* 업종은 한국거래소의 업종분류에 기초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기준(제조업의 경우 중분류)에 따른다.

** 평균부채비율 = 회사별 부채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회사수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함 [Σ (각 회사 부채비율)/회사수].

상법상 이사의 종류, 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1 들어가며

-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함(제317조).
- 이는 2009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사내이사는 사외이사로 구분하지 않고 이사로 등기하면 충분했음.
- 그런데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누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이를 정해야 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있음.
- 이사의 종류는 등기를 통하여 ① 법상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 ② 사외이사, 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③ 이사가 상무에 종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줌.
- 이에 상법상 이사종류에 관한 구분기준과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이슈를 해석론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고, 보다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입법론적 대안을 마무리에서 제시하고자 함.

2 이사의 종류에 관한 해석론

1. 상법상 이사의 종류의 구분기준

- 이사는 ① 사내이사, ② 사외이사, ③ 기타비상무이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될 수 있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표현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는 그렇지 못함. 즉, 3종류는 하나의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므로 해석론적 접근이 필요
- 그런데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정의규정이 있으며, 기타비상무이사도 그 개념표지를 서술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 이사의 범주에서 명확한 개념표지를 가진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차례로 소거함으로써 남는 범주를 사내이사의 개념표지로 삼는 방법으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김 춘 차장
법학박사
Tel. 02-2087-7131
chkim@klca.or.kr

- 먼저,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제382조 제3항).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제542조의8 제2항)

- 그리고 비상무이사는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므로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이해됨.¹⁾

※기타비상무이사는 기업실무에서 비상근이사, 평이사 등으로 부르며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두어 왔는데 이를 법제화 한 것임.²⁾

- 따라서 이사에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소거하면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만이 남게 됨. 즉,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의미함(통설).³⁾

- 그럼 여기에서 상무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

2. '상무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

- 상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상시 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임(통설).

- 회사의 일상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대표이사가 대표적인 예임. 또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본부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집행을 분담하는 이사들도 여기에 해당함.⁴⁾ 이사이면서 CEO, CFO, COO, CHO, CRO, CTO 등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업무집행을 분담한다는 의미임.

-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그 이사는 당연히 사내이사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될 것임.

1) 김교창,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인권과 정의」 제396호(2009), 63쪽;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631쪽; 정준우,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비판적 검토」,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통권 제30집), 2010, 281쪽.

2) 이에 따라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비상근이사라고 부른다는 견해도 있다(송옥렬, 상법강의, 흥문사, 2013, 946쪽).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3) 김교창, 앞의 논문, 63~64쪽; 송옥렬, 앞의 책, 946쪽; 이철송, 앞의 책, 631쪽; 정준우, 앞의 논문, 281쪽;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4, 441쪽.

4) 김교창, 앞의 논문, 63쪽.

5) 정준우, 앞의 논문, 281쪽, 주 21 참조. 최준선, 앞의 책, 441쪽.

- 따라서, 집행임원겸임 이사는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또 집행임원으로 등기해야 함.

- 즉, 업무집행이사가 사내이사이며, 비업무집행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라고 볼 수 있음.

- 상법에서는 '상무'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한 임원의 구분과 관련하여 '상근' 또는 '상임'이라는 표현도 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그 의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상법 제408조 제1항의 '상무'와의 비교)

- 이사의 종류 구분기준과 관련하여 '상무'의 의미를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상법 제408조 제1항에서의 '상무'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가 있음.⁵⁾

-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회사의 '상무'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그러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상법 제408조 제1항의 '상무'는 비통상적인 업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일상적·통상적 업무집행에 한정되는 개념인 반면에, 이사의 종류에서 구분기준으로 삼는 '상무'는 통상적이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곤란함.

('상근'과의 비교)

- 상법에서는 상무라는 표현 이전에 상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음. 상근감사가 그 대표적인 예임.

- 학자에 따라서는 상무를 상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⁶⁾ 그러나 '상근'은 정규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여부, 즉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 반면에,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양자는 다르다고 보아야 함.⁷⁾

- 실무상 상근과 상무는 대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상근하는 이사이지만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상근 감사위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근하지 않는 이사라 하더라도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예컨대 비상근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함.

(‘상임’과의 비교)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와 유사하게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임’을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구만으로 그 의미를 추론해 보면 ‘상시 회사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상임’과 ‘상무’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함.

- 다만, 상임에서의 ‘임무’는 ‘상무’에서 ‘업무집행’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됨. 예컨대, 감사업무도 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근하면서 내부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위원의 경우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무에 종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내부감사라는 임무를 상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이사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상무’와 ‘상임’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장회사이며 공기업인 한전KPS는 정관에 ‘상임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임(제27조).

※한편, 실무에서는 상무와 상근, 상임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상근하는 감사위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음.

〈 표1. 이사에 따른 상무, 상근, 상임 여부 구분 〉

구 분	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 등	비상임감사위원	사외이사
상무 여부	○	✗*	✗
상근 여부	△	△	△**
상임 여부	○	✗	✗

* 상근감사 자격 준용 경우에 한정

**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출근하는 경우에 대해 ‘상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전제

- 법상 ‘상무’, ‘상근’, ‘상임’이 구분이 의도적인지는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사에 대하여 상근, 상임, 상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음. 상무에 종사하면서 상근하지 않는다면, 상근하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사례에 속할 것이기 때문임.

3. 결정기관 및 결정의 의의

-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누가 결정할 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1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82조 제1항) 이사의 종류도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견해.⁸⁾ (2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선임절차도 다르고, 소집통지에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나,⁹⁾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과 관련한 이사의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견해¹⁰⁾가 대립함.

-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이사 선임 등기시 첨부서류와 관련한 답변에서 이사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함.¹¹⁾

- 실무에서는 상업등기선례의 취지를 이사의 종류에 대해 이사

회에서 결정하려면 정관상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사 종류 결정시 1설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1설에 따르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처리방법으로서 법적 논란의 소지가 적기 때문임.
- 다만, 1설에 따르면서도 이사의 종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경우 이사의 종류에 따라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¹²⁾ 그러나, 실무에서는 등기시 첨부서류인 주주총회 의사록에만 이사의 종류가 기재되면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종류에 따라 안건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꼭 표시하게 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사외이사와 균형을 맞추어 다른 이사후보자에 대하여도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뿐임.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와의 관계, 양자는 같은 것인가?)

- 이사가 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개념임. 즉,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는 이사의 경우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법상 사내이사라고 보아야 하는가?

-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정 없이 사실상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내이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반대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가 대표이사등의 결정에 의하여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사내이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상무이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동일한 논리에 의해 사내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임.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보통 선임절차가 사내이사와 다르고,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되므로 ‘사실상 사외이사’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어려움.

(이사종류의 결정이 갖는 의의)

- 결국, 이사의 종류는 이사의 업무내용(사외이사는 추가적으로 상법상 결격사유의 부존재)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임.
- 자격요건이 다른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상무의 종사 여부를 결정해야 사외이사로 결정되므로 단순히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사외이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행위가 있어야 사외이사로 보게 된다는 점은 동일

(이사 종류의 변경 절차)

-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외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거나 사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아니며,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직을 잃으므로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절차를 다시 거친 후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한편, 사외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설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¹³⁾ 2설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함.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인 집행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설에 따르면 집행임원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와 이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라고 하는 두 가지 결의가 있어야 함.
- 따라서, 실무상 간편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정관에서 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사내이사인지, 아니면 기타비상무이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6) 송옥렬, 앞의 책, 946쪽.

7) 동지 : 김교창, 앞의 논문, 396쪽.

8) 김교창, 앞의 논문, 63~64쪽.

9)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절차가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며, 소집통지시에도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서울고법 2010. 11. 15 결정, 2010라1065). 그러나 사건으로는 사내이사 또는 비상무이사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임을 알리고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다고 봄.

10) 이철승, 앞의 책, 635쪽.

11)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2009.7.2. 사법등기심의 관-1538 질의회답)

12) 김교창, 앞의 논문, 63~64쪽.

13) 임재연, 회사법강의Ⅱ, 박명사, 2014, 242쪽.

연결납세방식에서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정창모
본회 상담역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Q

A

당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연결납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연결법인간에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의 양도거래가 있어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손익의 이연여부 및 환입(실현)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연결집단 내부의 자산양도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실현 시까지 이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금액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은 거래수량과 횟수가 많고, 거래가 경상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매수법인에서 소모품이나 중간재로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이용형태가 다양하여 환입시점을 규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양도손익의 이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이연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서 양도소득을 이연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형고정자산(토지와 건축물 제외)
- ② 무형고정자산
-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 ④ 금융투자상품
- ⑤ 토지와 건축물

단, ①~③의 자산은 거래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을 이연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산 양도법인의 이연된 손익은 양수법인에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법인에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라 함은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대손처리하는 경우,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연손익을 인식합니다.

• 원칙 : 취득원가 대비 감가상각액 비율만큼 이연손익을 인식

$$\text{익금} \cdot \frac{\text{손금에}}{\text{산입하는 금액}} = \frac{\text{양도이익액} \cdot \text{손실액}}{(\text{양도손익이연액})} \times \frac{\text{양수법인의 상각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간편법 : 내용연수 대비 경과연수 비율만큼 인식

$$\text{익금} \cdot \frac{\text{손금에}}{\text{산입하는 금액}} = \frac{\text{양도이익액} \cdot \text{손실액}}{(\text{양도손익이연액})}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의 월수}}{\text{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월수}}$$

또한 내부거래 당사자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연결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더 이상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이연할 이유가 없으므로 내부이연손익을 일시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간의 변경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4. 관련 문제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음. 따라서 비상무이사뿐만 아니라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도 일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결론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임.

-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이 준용됨. 이에 따라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바로 상실하게 됨. 즉,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앞에서 논의한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또는 사내이사이지만 사실상 비상무이사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바 이들이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됨.

- 사건으로 결격사유는 사내이사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라는 사실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한편, 사내이사로 봄았지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선임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규범적으로 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요약하면 사내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든 사실상 상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는 모두 사내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봄. 다만 이는 해석론일 뿐이므로 법상 명확히 해야 실무상 혼란이 없을 것임.

3 마치며

1. 이사의 종류 구분기준 개선

- 상법은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함께 규정하여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 초래

-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사내이사와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먼저 구분하고, 사내이사는 다시 업무담당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¹⁴⁾
- 사내이사의 정의는 사외이사에 해당하지 않은 이사로 함.

2. 결정기관의 명시

- 이사의 종류 구분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결정기관과 업무담당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의 결정기관을 이원화함.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은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기업지배구조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이사와 비업무담당이사의 구분은 이사들 간의 업무분담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선임 행위,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비업무담당이사라는 점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내이사와 다름.

3. 사내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제한

- 사내이사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인 반면, 감사위원은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의 일원임.
- 그런데 사내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집행을 자신이 감사하는 자기감사의 모순이 발생.
- 따라서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나 구분하지 말고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 이사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성장과 측면에서 타당. ⑭

14) 정준우, 앞의 논문, 281쪽.

임원개별보수공개

고창현

본회 상담역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Q

12월 결산법인인 당사는 등기이사 A에게 매월 4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A는 당사의 지배인을 겸하고 있고, 위 4천만 원 중에는 지배인 급여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2월에 8천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8월에는 공정가치로 8천만 원 상당인 자사주를 상여주로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나 아직 행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약 A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현재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A는 당사의 계열사 이사도 겸하고 있는데 동사로부터 매월 1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A에 대한 보수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요?

A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공개 대상 임원

보수공개 대상 임원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등기임원(이사, 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임한 등기임원을 포함합니다.

2. 보수총액의 산정 방법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모든 급부(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를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합니다. 그 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된 경우의 행사이익도 포함됩니다. 현금 이외에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임원이 지배인 기타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용인분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미실현된 보수(예 :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이연지급하는 경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총액에는 귀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만 포함될 뿐 계열사 등 타사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수공개 내용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 또는 실현된 모든 보수의 총금액을 기재합니다. 현금 이외에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와 공정가치 산출방법 등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임원이 지배인 기타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용인분급여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미실현된 보수(예 :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부여현황)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5억 원의 기준은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일단 공개의무가 발생하면 미실현된보수의 내역도 같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계열사 기타타사로부터 수령받는 금액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4. 결론

본건의 경우 귀사는 등기이사인 A에게 9월(3사분기)까지 5억 원 이상(5억 2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3사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A에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상여주지급 및 공정가치산출방법과 지배인분급여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부여현황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IFRS 15 수익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김성남
본회 상담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Q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최근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FRS를 적용하는 상장법인은 2018년부터 IFRS 15 기준서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IASB는 2015년 7월 30일 이미 제정공표된 IFRS 15를 개정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개초안은 수익기준서를 논의한 Transition Resource Group의 제안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은 2015년 10월 28일입니다. IASB는 공개초안의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년 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공개초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IASB는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을 해당 계약의 맥락에서 구별된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하는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적용사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적용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사이의 통합,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

기업이 고객과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이를 통제한다면 본인(총액 수익인식)이며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순액 수익인식)입니다. IFRS 15는 기업이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문단 B37)를 예시하고 있으나 공개초안은 이를 개정하여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정 예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초안은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기 위한 회계단위는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기업이 동일한 계약상 본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의 통제원칙과 기업이 본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무엇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적용사례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지적자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 약속의 성격 결정

IFRS 15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 약속의 성격이 해당 기업의 지적자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약속(따라서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수익을 인식)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문단 B58). 이들 요건 중 하나는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하도록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당연히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된 문단 B59A는 1) 기업의 활동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자산의 형태(예: 디자인)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2) 기업의 활동이 지적자산으로부터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활동에 따라 고객의 효익이 생기거나 연동되는 경우)에 기업의 활동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판매기준 로열티와 사용기준 로열티

IFRS 15에 의하면 지적자산의 라이선스와 교환하여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와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해야 합니다(문단 B63).

- 1) 후속적 판매나 사용
- 2)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가 이행(일부이행 포함)

이러한 수익인식 기준과 관련하여 공개초안은 두 개 문단(B63A와 B63B)을 추가하여 문단 B63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 B63의 규정은 지적자산의 라이선스가 로열티의 주요 항목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배급사인 기업이 영화관 운영자인 고객에게 영화상영권을 라이선스하고 추가로 극장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광고활동을 제공하더라도 영화상영권 라이선스가 로열티의 주요 항목이기 때문에 광고활동에 대한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사용기준 로열티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둘째, 기업은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 전액을 문단 B63의 규정 또는 문단 50–59의 변동대가 수익인식규정(문단 B6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기업은 로열티를 문단 B63(로열티 수익인식기준)과 문단 50–59(변동대가 수익인식기준)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수익인식 할 수 없습니다.

5. 경과규정

공개초안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기업이 완전소급법을 사용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개시일 현재 완료된 계약을 재작성(restate)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개시일 전에 계약변경이 있었던 경우, 기업은 여러 계약변경의 효과를 구분하여 각각의 변경에 따라 계약을 소급재작성하지 않고,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개시일 전에 발생한 모든 변경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간편법은 완전소급법이나 수정소급법을 채택한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사견이며 본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최신법령정보

이 내용은 법제처 및 국세청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세부자료는 법제처 (www.moleg.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의 Web Site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말 기준 약 470조원에 달하였으며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분부 또한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안 제5조)
 - 1)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함.
 - 2)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1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가입자 대표 및 공익 대표로 구성함.
 - 3)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안 제6장의2 신설)

- 1) 여유자금의 운용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기금운용 전문가로서 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정책 수립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 및 기금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안 제6장의3 신설)

- 1)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함

- 2)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 전문가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명과 정관으로 정하는 수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둠
- 3)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보상을 받도록 함

3. 진행경과

- 2015.8.17. 박윤옥의원 등 10인 발의
2015.8.18. 보건복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서 25%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1항).

2. 진행경과

- 2015.8.13.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
2015.8.17.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II. 비금융기업의 자산 운용소득 관련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은 2006년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5.1%에서 2010년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인 19.7%로 높아진 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가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임.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고 Post-Cris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하여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자산 운용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73조 제1항).

2. 진행경과

- 2015.8.6. 은수미의원 등 39인 발의
2015.8.7.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 외국법인 주식보유현황 공시 등 관련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 왔음.

이에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제6호 신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내부의 행동원리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원리에 작동 할 수 있는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기 위해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 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2. 진행경과

2015.8.12.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2015.8.13. 정무위원회 회부

II. 상호출자 금지 대상 관련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항 신설).

2. 진행경과

2015.8.7. 신학용의원 등 13인 발의

2015.8.10. 정무위원회 회부

I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 관련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

어지기 힘든 상황임.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사회의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제14조의4).

2. 진행경과

2015.8.6. 오재세의원 등 10인 발의

2015.8.7. 정무위원회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적대적 M&A 방어수단 등 관련

1. 제안이유

최근 외국 투기자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인 논쟁과 우려를 낳고 있음.

이미 선진국들은 적대적 M&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방어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상장회사들은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나 변칙적 순환출자 등을 이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단들은 법적,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입비용에 비해 방어의 효율이 낮음으로써 기업역량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

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서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주식 투자가 아니라 장기 주식보유를 유도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이익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분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 경영권 방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함(안 제344조 제1항, 제344조의3 제1항 및 제369조 제1항).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2 및 제432조의3 신설).

다. 회사가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각각 주식의 권리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액면 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안 제330조, 제432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5 신설).

마.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32조의6 신설).

바.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등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432조의7 신설).

사.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留止)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8 신설).

아.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9 신설).

3. 진행경과

2015.8.4. 정갑윤의원 등 12인 발의

2015.8.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II. 자기주식 처분 관련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본총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총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2조).

2. 진행경과

2015.8.3. 박영선의원 등 11인 발의

2015.8.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국회의원 발의 법률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법인, 서면-2015-법인-1144, 2015.08.11)

[질의]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정기)보험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당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참조 2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

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금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발행
시장

2015년 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은 총 14조 1,649억원으로 전월(14조 9,458억원) 대비 7,809억원 감소(5.2%↓)하였으나,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0조 4,386억원 증가(15.0%↑)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중 주식발행 규모는 1조 2,342억원으로 전월(5,475억원) 대비 6,867억원 증가(125.4%↑)하였고, 전년 동기(2조 8,477억원) 대비는 6,218억원 증가(21.8%↑)하였다.

기업공개는 15건 7,394억원으로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대규모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면서 기업공개 규모가 최근 5년동안 최고치였던 2014년 12월(9,384억원)에 근접하였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건수는 전월보다 감소(7건→5건)하였으나 발행총액은 오히려 증가(2,346억원→4,948억원)하였다.

2015년 5월중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 9,307억원으로 전월(14조 3,983억원) 대비 1조 4,676억원 감소(10.2% ↓)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14.7% 증가하였다.

일반회사채는 4조 4,000억원으로 전월(5조 250억원) 대비 6,250억원 감소(12.4% ↓)하였고, 금융채는 3조 7,750억원으로 전월(4조 6,922억원) 대비 9,172억원 감소(19.5% ↓)하였다. 또한, ABS는 2조 2,790억원으로 전월(1조 6,309억원) 대비 6,481억원 증가(39.7% ↑)하였고, 은행채는 2조 4,767억원으로 전월(3조 502억원) 대비 5,735억원 감소(18.8% ↓)하였다.

2015년 7월중 일반회사채 발행실적을 업종별, 신용등급별, 자금용도별, 만기별, 금융채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1조 2,450억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조 1,500억원) 기타(5,200억원) 순으로 발행하였다.

유가증권시장

유통 시장

8월의 유가증권시장은 월초 KOSPI 지수가 2,030.16P에서 출발하여, 월초대비 88.67P 하락한 1,941.49P로 종시를 마감하였다. 기업의 매출 부진 및 신흥국과 자원

보유국 등의 자금이탈이 심화되면서 10일 장중한때 2,000P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북한의 지리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국내증시가 쇼크를 맞아 6일동안 153.65P가 하락하며 장중한때 1,800.75P까지 추락, 2013년 6월이후 2년2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남북고위당국자 간 협상 타결 및 미국 증시훈풍 등으로 27일 1,900P를 회복한 후 연일상승세를 유지하며 8월 마지막장을 1,941.49P로 마쳤다.

코스닥시장

8월의 코스닥시장은 월초 KOSDAQ 지수가 725.06P에서 출발하여, 월초대비 37.95P 하락한 687.11P로 8월 증시를 마감하였다. 첫날을 하락장으로 마감한 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일 750P를 가볍게 돌파하였으나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12일에는 장중한때 700P선이 깨지기도 했다. 이후 6일연속 하락하며 118P가 밀려 24일에는 610P 초반까지 밀렸다. 25일 남북고위당국자 간 협상이 타결되며 32.10P 상승을 시작으로 4일연속 상승하며 680P선을 가뿐히 넘어섰으나 700P 탈환에는 실패하며 687.11P로 8월장을 마감하였다.

정부, 회사채 시장안정화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회사채시장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차환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대신 인수하는 방식으로, 세계 금융시장 불안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일부 대기업들의 경영악화가 더해지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 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회사채시장 지원방식은 '한국은행, 산업은행에 상대매출 방식으로 500억원 지원→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 500억원 출연→신용보증기금, 회사채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도 500억원의 재정을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총 1,000억원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 총 1조원 수준의 ‘회사채안정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올 하반기 회사채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산업은행, 기업부채 전수조사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총체적인 기업부채 현황을 점검하는 대
체바우 페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조선과 건설, 해운에 이어 최근 정유와 철강 업종에서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등 위험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정상기업이 조달하는 직접금융(시장성 차입)은 해당기업이 부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같은 예방적 구조조정을 거칠 기회없이 곧바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나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상기업들은 저금리에 따라 조달비용이 저렴해진 직접금융으로 물리고 있고,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은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다.

정부, '원화 국제화' TF 구성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화 국제화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제 무역 및 서비스 거래

시 주요 결제화폐로 원화를 사용하는 방안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직접 원화표시 채권과 주식매입 등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원화를 직접 사고 팔거나 빌릴 수 있도록 외환 거래법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원화 국제화에 따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화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토는 진행하지만 일시에 모든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장의 반응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5 세법 개정안, 수출중소기업 부가세 납부 유예

기획재정부가 8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를 포함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납부했다가 차후 환급받아야 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고 세관 수입신고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차후 부가세도 환급해주지 않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 예산안, 국방·일자리 예산 확대, SOC 축소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성장률과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일자리·복지·문화·국방 예산은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세입 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매우 근접하는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는 5년 만에 '긴축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성장 전망치 현실화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경제성장을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연도의 경제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장을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실제 세수결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고 지난 해 결손 규모는 1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결손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가장 크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도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유발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을 3.5%(실질)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3%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내년 물가와 성장을 전망치가 많이 현실화될 것으로 안다”며 이를 지표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3%, 1.8%로 제시했다. 이밖에 주요기관의 내년 성장을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 LG경제연구원 2.9%, 무디스 3.0%, 씨티그룹 3.1% 등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재추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시장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상황 등을 점검하며 증시안정을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숙도에 걸맞는 국제적 평가를 통해 우리 시장에 대한 저평가를 극복하고, 기존 단기투자 성격의 신흥시장 투자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중장기적 성격을 가지는 선진시장 투자자금으로 대체하여 장기·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이다.

한국증시는 2008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검토대상(Watch List)에 올라간 후 이듬해부터 6년 연속 선진지수 승격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검토 대상에서도 탈락했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검토대상에 일단 올라가야 다음해에 편입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년 초 시행 눈앞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ISA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가 도입됐고,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뤄져 온 재산형성 세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ISA제도 도입방안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상시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현장 지원단’을 설치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금융현장지원단은 금감원 금융혁신국과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하면서 금융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을 지원하게 되며, 3년 한시조직으로 1년간 평가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사 및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운 현장점검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금융당국의 대 시장 의견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증시는 2008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검토대상(Watch List)에 올라간 후 이듬해부터 6년 연속 선진지수 승격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검토 대상에서도 탈락했었다. MSCI

‘복리의 마법’ 통하지 않는 시대, 투자 관심 가져야

김성은 기자

머니투데이



시중 예금금리 1%대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에 없던 신조어가 생겨났다. ‘머니노마드’. 굳이 풀이하자면 재테크 유목민이라는 뜻으로 단 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끊임없이 떠도는 투자인구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57%다. 5년 전인 2010년 7월만 하더라도 금리는 3.10%였는데 그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예전에 통용되던 ‘복리의 마법’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과거 예금금리가 연 6%일 때는 원리금이 원금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년이면 됐다. 예금금리가 연 1.5%로 낮아진 현재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이보다 4배가 더 긴 48년이 걸린다. 25세 취직한 사회인이 알뜰히 저축해 원금 두 배의 돈을 손에 쥐려면 73세가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저축만으로는 더이상 성공적인 재테크를 논할 수 없게 된 이상 좋은 짚든 우리는 투자의 세계에 발 담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관리 수준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표한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행위 점수는 5.1점으로 평균(5.3점) 이하였다. 금융행위란 재무상황관리나 재무설계 등을 뜻한다.

반면 복리이자 계산 등 금융지식에 관한 점수는 14.9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수리적으로 아는 것은 많지만 이를 실제 자산관리에 활용하는 수준은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초중고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관련 행위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3층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연금의 가입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연금상품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내돈이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는지, 무조건 원금만 보장할 게 아니라 기대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설계에 동참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많은 금융 투자기관이 재테크 전문가를 앞세워 개인연금, 퇴직연금 관련 교육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일 수 있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들어봄직 하다. 특히 각 회사마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실무 담당자라면 필히 이같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연계해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머니무브(money move)’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저 힘쓸릴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더 늦기 전에 결정할 때다.

초(楚) 장왕(莊王)의 유머 감각과 리더십

김영수 고전연구가



유머를 알았던 초나라 장왕의 상

초 장왕

춘추시대 장강 이남의 강대국 초나라 장왕은 충고를 잘 받아들인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우맹(優孟)이란 궁중 악사의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인 다음 일화는 장왕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장왕은 말을 무척이나 아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하고 화려한 집의 장막 없는 침대에 살게 하면서 대추와 마른 고기를 먹이로 먹었다. 장왕의 이런 극진한 보살핌 덕(?)에 맡은 비만증에 걸려 죽고 말았다. 아끼던 말이 죽자 장왕은 슬픈 나머지 관관을 갖추어 대부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라는 생뚱맞은 명을 내렸다. 신하들이 지나친 처사라며 들고 일어났지만 장왕은 막무가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우맹은 궁궐로 들어와 장왕 앞에 엎어져 통곡했다. 장왕이 그 연유를 물자 우맹은 대왕께서 얼마나 아끼던 말인데 거기에 걸맞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귀가 술깃해진 장왕이 그 방법을 물자 우맹은 이렇게 답했다.

“옥을 다듬어 속널을 만들고, 문양이 화려한 가래나무로 겉널을 만들 것 이며 (중략) 군사를 동원하여 무덤을 파고, 노약자로 하여금 흙을 지게 하여 봉분을 올리고, 제나라 조나라 대표를 앞장세우고 한나라 위나라 대표는 뒤에서 호위하게 하십시오. 사당을 세워 최고의 제사를 지내 주고 1만 호의 읍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후들은 대왕께서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말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보다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를 치러 장왕이 사람보다 말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게 해야 한다는 악사 우맹의 빼있는 충고에 정신이 버쩍 난 장왕은 ‘내 잘못이 그렇게 크단 말인가’라며 그냥 다른 짐승들처럼 땅에 묻게 했다.

‘절영지연(絕纓之宴)’

다음 일화는 장왕의 마음 씀씀이가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위 초기 권신 두월초의 반란으로 곤욕을 치르던 장왕은 명사수 양유 기의 공으로 반란을 힘겹게 평정했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궁중에서 열렸다. 장왕은 오랜만에 실컷 즐거보자며 무희들까지 동원하여 밤이 으슥하도록 마셨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방에 등불이 켜졌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몰아쳐 등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주위는 칠흑같은 어둠에 빠졌다. 그 순간 장왕이 아끼는 애첩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대왕, 얼른 불을 밝히십시오. 어둠 속에서 어떤 자가 첩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첩이 그 자의 갓끈을 끊어서 죽고 있느니 불이 켜지면 어떤 작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왕이 가장 아끼는 애

첩의 몸을 더듬었다니, 그 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죽음을 면키 어려워 보였다. 침묵에 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장왕의 우렁찬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직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여러 장수들은 모두 갓끈을 끊고 갓을 벗어 던져라. 오늘 밤 신나게 놀아 볼 것이다. 만에 하나 갓끈을 끊지 않은 장수가 있으면 흥을 깨 별로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애첩의 몸을 더듬은 자는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술 자리가 끝나고 침실로 돌아온 장왕에게 애첩은 볼멘소리로 항의했다. 이에 장왕은 왕과 신하들이 실로 오랜만에 관례를 깨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중에 장수 하나가 취기에 여인의 몸을 더듬는 것은 큰일이 아니거늘, 그걸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고 소란을 떤다면 그것은 한창 흥이 오른 장수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왕의 체통을 깎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애첩을 다독거렸다. 이 일화가 유명한 ‘절영지연(絕纓之宴)’이다. ‘갓끈을 끊고 벌인 연회’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일화는 뒷이야기가 더 남아 있다. 그 뒤 장왕이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악전고투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 때 웬 장수 하나가 나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정말 용감하게 적진을 유린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장왕이 그 장수를 불러 공을 치하하자, 장수는 그 때 갓

끈을 끊고 술자리를 계속하게 하여 자신의 실수를 감추어준 왕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며 장왕에게 공을 돌렸다. 애첩의 몸을 더듬은 그 장수였던 것이다.

매력있는 리더의 리더십이란?

장왕은 인간의 얼굴을 한 리더였다. 실수도 했고, 또 그 실수를 지적하는 보잘 것 없는 악사의 충고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부하 장수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고 모든 장수들에게 갓끈을 끊게 한 대목에서는 가슴이 넓은 장자로서의 풍모가 느껴지기도 한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리더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장왕의 진정한 매력은 그가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리더로서 식견과 자기 성찰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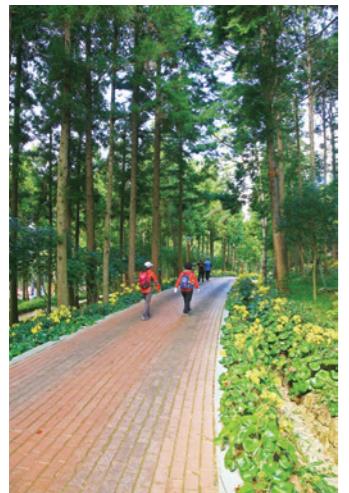
리더가 모든 면에서 잘 나야 하고, 인재를 압도해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어쩌면 26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장왕은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자신을 뛰어넘는 인재가 넘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보잘 것 없는 악사의 충고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인 사실도 이런 큰 성찰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유머를 알고, 충고를 수용하고, 넉넉한 장자의 풍모로 부하들을 편하게 해주었던 매력남 장왕의 통 큰 리더십에 은근히 부아가 치밀고 욕지거리가 나온다. 왜 그럴까? ③

탐진강과 억불산을 아름답게 즐기다 장흥여행



장흥은 탐진강이 가로지르고, 독특한 생김새의 억불산이 묘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특유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고장이다. 그 풍요로움은 토요상설시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흥 토요시장에 가면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장흥 토요시장과 함께 억불산에 깃들어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 억불산 삼림욕장, 상선약수마을 등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다.

글·사진 | 문일식(여행전문칼럼니스트)



즐기고 또 즐겨라! 한국의 전통재래시장, 장흥 토요시장

탐진강이 가로지르는 장흥 읍내에는 장흥 토요시장이 있다. 원래 2, 7일 날 열리는 전통 5일장이었다. 2005년 한국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행객들이 들어나자 한국에서는 최초로 관광형 토요상설시장으로 거듭난 것이다.

토요시장의 명물은 길거리에 펼쳐놓고 파는 난전, 일명 할머니장터다. 할머니장터는 군내 거주하며 군에서 인정한 어르신들만 판매할 수 있어 이름과 지역이 기재된 목걸이를 걸고 있는 것도 독특하다. 어르신들은 각자 직접 기르고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여기 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사투리, 웃음소리가 섞여 소란스럽고, 북적거리는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만나는 곳이다. 온갖 야채와 과일 뿐 아니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고장답게 키조개와 매생이, 바지락 등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넘쳐난다.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문화 전통음식거리도 이채롭다. 한국으로 시집온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고국의 맛을 뽑내며 판매하는 먹거리 공간이다. 베트남의 월남쌈, 일본의 타코야끼, 필리핀의 롬피아 등 마치 아시아를 여행하며 별미를 맛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토요시장 내에는 한우 판매장이 3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유난히 많다. 장흥은 한 때 인구가 15만 정도 될 정도로 번창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4만 명이 조금 넘는 곳이다. 인구는 4만 명 정도인데, 한우 사육두수가 5만 두가 넘는다. 장흥은 말 그대로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사는 고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한우는 도축한 뒤 바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우판매점으로 들어와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맛볼 수 있다.

억불산 아래 힐링의 명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편백숲 우드랜드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장흥의 명소다. 1960년대에 조성한 100ha가 넘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 일부를 활용해 조성한 공간이다. 아기자기하게 숲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편백나무 톱밥이 깔린 숲길은 편백나무의 진한 향과 함께 쭉쭉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무 풍경이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비비에코토피아는 편백숲 우드랜드를 대표하는 곳이다. 조성 당시 누드산림욕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지금은 부직포로 만든 옷(대여료 3천원)을 입고 입장한다. 비비에코토피아 내에는 토굴과 대나무움막, 등의 자와 해먹 등이 설치되어 있어 편백나무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에 40~120분 정도 즐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니 참고하자.

비비에코토피아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나 있는 말레길도 꼭 걸어보자. 말레는 대청을 뜻하는 전라도 지방의 옛말로 대청이라 하면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로 가족간의 소통공간을 의미한다. 말레길 역시 치유의 숲이자 걸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말레길은 편백숲 우드랜드의 울창한 편백림을 따라 억불산 정상까지 3.5KM에 이른다. 거리가 꽤 길어 보이지만, 실제는 무장애 데크로드로 훨씬이나 유모차도 오를 수 있도록 평지에 가까운 경사가 거의 없는 길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어려움 없이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다.

편백소금방은 편백나무와 소금을 이용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증가나 자연치유능력을 높여주는 공간이다.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천일염을 이용한 소금동굴, 소금마사지방, 소금해독방, 소금 단전호흡방 등은 스트레스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편백반신욕방은 편백나무로 제작한 반신욕기에 들어가 앉아 반신욕을 즐기는 곳이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체험을 즐기는 모습이 편안하게 보인다.

억불산 숲을 즐기다. 억불산 산림욕장

장흥 토요시장에서 탐진강 너머로 시선을 돌리면 하늘로 우뚝 솟은 억불산이 보인다. 셀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있다 하여 이를 붙여진 해발 511m의 산이다.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조성한 비비에코토피아를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유모차나 휠체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인 말레길도 있지만, 대나무숲, 동백숲, 편백숲 군락을 한꺼번에 만나는 억불산 산림욕장에서도 억불산을 즐길 수 있다.

억불산 산림욕장의 출발점은 평화약수터와 상선약수마을의 대나무 숲이다. 억불약수터를 거쳐 억불산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지만, 억불약수터에서 목을 죽인 후 목재 데크를 따라 성불사를 거쳐 상선약수마을로 내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나무 숲은 햇빛 한 줌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빽빽해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완만한 경사를 따라 밤나무, 참나무 등 활엽수림, 편백림이 차례로 이어진다. 가파른 오르막을 잠시 오르나 싶더니 금세 억불약수터다. 극심한 가뭄에도 약수가 시원스럽게 솟아난다.

삼림욕장 아래의 상선약수마을도 한 번 들러보자. 상선약수마을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 머무는 물처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에 유래했다. 마을 입구의 짧은 메타세쿼이아 길과 저수지,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송백정과 노송, 배롱나무 군락의 어우러진 풍경, 사랑나무와 진입로가 아름다운 고영완 가옥까지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고즈넉한 마을이다.



사람보다 소가 많은 고장, 맛있는 한우구이

장흥은 거주하는 사람보다 소 사육두수가 더 많은 고장이다. 장흥토요시장에서는 장흥 농가에서 직접 키우고, 도축과 직판장을 직접 운영해 저렴하면서도 신선한 한우를 맛볼 수 있다. 장흥토요시장 내의 식육점에서 원하는 한우 부위를 구매한 후 주변 식당에서 자릿값을 내면 구워먹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흥을 대표하는 표고와 키조개를 함께 먹는 장흥 삼합도 한번 맛보자. 장흥토요시장 내 끄니걱정(061-862-5678)은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밀반찬이 인상적인 식당이다. 장흥군청 인근에 위치한 신녹원관(061-863-6622)은 바다와 인접한 전형적인 남도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집이다. 키조개의 산지인 안양면 수문항 인근에 있는 바다하우스(061-862-1021)는 키조개 회무침을 잘 내는 곳이다. 막걸리 식초를 이용해 갖은 야채를 넣어 새콤달콤 무쳐내는 키조개 관자의 맛은 단연 압권이다. ⑥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장흥IC에서 나와 장흥IC교 차로에서 장흥방면으로 좌회전, 장흥교 오거리에서 장흥교를 건너면 장흥 토요 시장이다. 장흥군청에서 군민회관오거리로 나와 회천, 안양방면으로 좌회전, 향 양사거리에서 우회전에 직진하면 편백숲 우드랜드에 도착한다. 장흥군청에서 군민회관오거리로 나와 1km 남짓 직진하면 상선약수마을 입구에 이른다.



슈퍼맨을 위한 변명

조정화 라이프코치, 칼럼니스트



'여성상위시대'라는 말은 아직 이른 것 같지만, 가끔은 이 시대 남성들이 좀 안쓰럽게 느껴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혼 생활이란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요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충돌하는 일의 연속이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압도적인 차로 남성에게 많은 주문이 쏟아지는 것 같다. 여성에게는 더 바랄 것도 없이 언제나 많은 의무가 주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다.

아내를 잠시 돋는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빠'라고 조금만 뿌듯해 할라치면 '송일국, 션' 같은 슈퍼맨들이 나와서 그 동안의 헌신을 당연한 헌신으로 만들어 버린다. 공공의 적은 주변에도 널려있다. 가정적이라고 소문난 아이 친구 아빠, 아내 친구 남편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그렇다고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많은 아빠여서는 또 안된다. 바깥에서도 번듯하게 일하고, 집에서는 '요섹남'(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흉내라도 낼 줄 알아야 겨우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시대 가장을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있다면 바로 '요구 받는 자'가 아닐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집에서는 아내에게 사방으로 치이면서 늘 '더 잘하라'고 끝없이 요구 받는 존재 말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살길 원하는데 외부로부터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계속 종용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이다. 그러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나 모든 상황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이렇게 회사와 가정, 양쪽에서 모두 완벽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증상을 '아틀라스 증후군'이라 한다. 제우스로부터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은 아틀라스처럼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슬픈 사실은 남성 본인은 그래도 자신이 썩 괜찮은 가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기 시간도 없이 가족을 위해 시시때때로 여행하고, 외식하고, 마트 가고, 아이들과 놀아줬으니 할 일을 다 했다

고 여길 법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동상이몽' 상태다. 몇 년 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직 0.9퍼센트의 아이들이 아빠와 상담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는 수준은 혹시 무뚝뚝하고 무관심했던 자신의 아버지에 비해서인 게 아닐까? 혹은 그 동안 가족과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왔는지도 모른다.

쏟아지는 방송 미디어와 육아서는 앞으로도 남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종래에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아빠를 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흐름에는 가사와 육아에서의 완전한 평등과 그 이상의 해방을 원하는 여성의 욕구도 관련이 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월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좋은 남편'부터 되는 게 빠를 것이다. 가사의 일상성과 고됨을 공감할 수 있으되, 밥 해먹고 쓰레기 버리는 것 말고도 공유할 대화 소재가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요구에 무조건 'YES'만 하다가는 숨이 모자라서 슈퍼맨도 날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챙겨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분석학자 루이지조아는 저서 〈아버지란 무엇인가〉에서 "아버지로서의 성공은 그가 자녀와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달렸지만 동시에 사회와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는가에도 달렸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사회와 관계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엄마의 욕심에 간힌 아이들을 풀어주기도 하는 넓고 단단한 마음에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느낀다. 엄마를 대체하려는 노력도 좋지만, 그것은 아마 집안일처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사회와의 접점에선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키우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교육과정 안내

주식전문연수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시담당자 교육과정」(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24조)의 대체 인정교육과정

- 교육기간 : [제121차] 9. 14(월) ~ 9. 18(금) (09:30~18:30, 1일 8시간, 총 39시간)

상법(시행령)의 실무쟁점 및 관련 표준 제규정 해설 특별연수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의 내용 중 특히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상장회사 표준정관'과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등 본회의 표준 규정과 함께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규정의 주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 교육기간 : 9. 21(월) ~ 9. 22(화) (09:00~17:00, 1일 7시간, 총 14시간)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실무적 이해와 쟁점 해설 특별연수

관련 업무담당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방대한 상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쟁점별 해설과 함께 최근 상법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아울러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적 활용에 도움줄 수 있는 교육내용

- 교육기간 : 10. 5(월) ~ 10. 7(수) (09:00~17:00, 1일 7시간, 총 21시간)

추정재무제표 작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이해 와 엑셀 사례 연습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추정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 이론 해설 및 엑셀 프로그램 활용 능력 배양과 함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추정 재무정보를 필요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과정

- 교육기간 : 9. 21(월) ~ 9. 22(화) (09:00~18:00, 1일 7시간, 총 16시간)

제3회 기업가치평가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노트북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전문가에게 바로 조언을 받아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0. 12(월) ~ 10. 16(금) (09:00~18:00, 1일 5시간, 총 37시간)

제41회 기업내부감사사 양성과정

기업내부감사인의 기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감사 분야에 대한 이론과 법규를 비롯하여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0. 12(월) ~ 10. 16(금) (09:30~18:30, 1일 5시간, 총 37시간)

국·영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관련 담보실무 특별연수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쟁점을 샘플 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영문계약서의 기본적 논리와 차이점을 정리하는 동시에 계약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계약관련 담보 실무까지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 교육기간 : 10. 6(화) ~ 10. 7(수) (09:00~17:00, 1일 7시간, 총 14시간)